

4대종단 이주·인권협의회 심포지움

“종교인의 관점으로 보는 난민”

일시: 2018. 12. 4(화) 2시

장소: 기독교회관 2층 조예홀

목 차

1부(난민 일반론과 종단별 입장 발표)

사회: 최서연 교무(원불교 인권위원회)

인사말: 김은경 목사(NCKK 이주민소위원회 위원장)

개회사: 이상민 신부(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총무)

난민 일반론 기초발제(25분): 이 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05
천주교 발제(10분): 심유환 신부(예수회 난민 봉사기구 한국대표)	27
원불교 발제(10분): 강현욱 교무(원불교 인권위원회)	37
개신교 발제(10분): 홍주민 목사(한국디아코니아연구소 소장)	43
불교 발제(10분): 혜찬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51

2부(난민 당사자 발표와 질의응답)

사회: 최서연 교무(원불교)

난민 당사자 발표(20분): Nyorkor Amiatta Finda(동두천난민공동체 대표)	55
--	----

질의응답(발제자 및 참가자 전원 대상: 30분)

홍보 및 실무 : 황준호 간사(천주교) 010-6254-1945

난민의 현황과 한국사회의 인권과제¹⁾

이일 변호사²⁾

1. 왜 지금 난민에 대해서 묻는가? - 소위 제주 피난 예멘 난민이 한국에 던진 사건적 의의

1994년 이후 시작된 한국의 난민정책은 2018년 4월 이후 시작된 ‘제주 피난 예멘 난민’이란 사건적 계기 이후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형태의 길을 건넜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였던 난민이 ‘보이는 존재’로 공론장에 강제로 부각되었으나,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호명되는’대로 불렸다.³⁾ 종전의 ‘난민인정절차의 유지 및 소극적 억제’ 취지의 단선적 정책밖에 없었던 정부는 방향도, 자리도 찾지 못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공보적으로 자랑해온 난민법과 관련 정책은 현장에서 작동되기 힘든 공백을 여실히 드러냈다. 난민들에 대한 정책도, 난민들과 공존해야 할 시민들에 대한 정책도 한계를 드러냈다.

정부의 이런 난민 정책에 관한 빈자리는 ‘집단’을 공공의 적으로 형상화하는 혐오세력의 목소리가 대신 채웠고, 그러한 목소리는 ‘난민과 연대할 수 없는 국민’이 마치 촛불혁명의 주체로서 ‘정당성’을 갖는 헌법제정권력인 ‘국민’인 것처럼 오용되게 하였다. 직접민주주의의 실험장으로 여겨졌던 청와대 국민청원의 최다청원이 극우적 목소리로 이용된 것, 이것은 난민문제가 더 이상 정책의 문제만으로 한계지워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난민이란 주제는 이제 한국사회내의 ‘인권의 주체’를 묻는 문제로, 한편 민주주의의 문제로 전화되었다. 영구적인/부차적이지 않은 사회구성원인 난민의 존재성에 대한 질문은, ‘한국사회의 미래’

1) 본 발제문은 2018년 10월 19일에 열린 이민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본 발제자의 ‘제주 피난 예멘 난민을 통해 비춰본 난민정책의 현주소’를 수정 보완한 원고입니다.

2)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il.lee@apil.or.kr

3) 가짜 난민, 남용적 난민, 잠재적 범죄자, 한국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자, 일자리를 침탈하는 자.

4 대중단 이주·인권협의회 심포지움 “종교인의 관점으로 보는 난민”

가 ‘자민족끼리의 평화’의 기치하에 ‘엄격한 제한적 통제로 사회내 외국인을 2등국민으로 만들 것인 지’, ‘다양한 문화, 국적, 인종이 존중받는 이민국가로 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던지게 된 계기가 된다.. 또한 난민문제의 전지구적 발생과 항구화로 인한 평화운동과의 연대모색이 필요한 측면에서, 난민정착국가에서의 반이민/반난민 취지 정치이념의 지분확보와 정치적 우향우가 예전에 없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지구적 연대가 필요한 측면⁴⁾에서 그 전선이 매우 다변화되고 있다.

이 발제문에서는, 이와 같이 향후 보다 다양한 탐구가 필요한 주제들⁵⁾은 제외하고, 정부의 난민 정책의 구조를 세 가지로 분설한 후, 제주 피난 예멘 난민들에 대한 그간의 정책에서 정상적으로 그와 같은 정책이 작동하였는지를 평가하고, 향후의 바람직한 정책적 방향에 대하여 제언을 하고자 한다. 그 전에 간략한 사건의 경과를 개관할 것이다.

2. 난민의 현황

가. 국제사회의 난민 현황⁶⁾

[표]1 유엔난민기구가 분류한 보호필요성 있는 대상자(2017년말 기준)

	난민	비호 신청자	귀환민	국내 실항민	무국적자	기타	합계
아프리카	6,268,204	508,794	1,702,780	14,511,694	711,589	510,143	24,213,204
중동 및 북아프리카	2,704,943	234,834	2,496,741	19,960,992	370,872	15,437	16,783,819
아시아 태평양	4,209,731	159,919	696,021	2,715,806	2,212,700	528,844	10,523,021
유럽	6,114,274	1,308,628	605	3,006,915	552,339	77,356	11,060,117
미주	644,195	878,723	205	7,923,109	6,483	464,409	9,917,124
합계	19,941,347	3,090,898	4,896,352	39,118,516	3,853,983	1,596,189	71,439,506

4) 예컨대, 독일의 경우 소위 2015년 유럽 난민 위기(Refugee Crisis) 직후와 달리, 극우적 지향을 갖고 있는 '독일 민족을 위한 대안(AFD, Alternative für Deutschland)이 정치적 세력화를 해 나가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남긴 가슴아픈 역사적 유산인 '소수자 혐오의 위험성', '차별 없이 공존하는 사회'에 대한 이상들이 다시 후퇴하고 도전받게 된 것이다.

5) 난민과 인권, 난민과 민주주의, 난민과 소수자, 난민과 페미니즘 등 앞으로 공론화되어야 할 다양한 주제들이 산적해 있다.

6) 표1내지 6은 김성인, '제주지역에서의 예멘난민 현황과 과제'에서 인용, 그래프 1내지 2는 난민 인권센터 '2017년 난민현황'에서 인용.

[표]2 2017년 난민 비호 상위 10개 국가

국가	난민수
터키	3,480,348명
파키스탄	1,393,143명
우간다	1,350,504명
레바논	998,890명
이란	979,435명
독일	970,365명
방글라데시	932,216명
수단	906,599명
에티오피아	889,412명
요르단	691,023명

[표]3 2017년 난민 발생 상위 5개 국가

국가	난민수
시리아	630만
아프가니스탄	260만
남수단	240만
미얀마	120만
소말리아	98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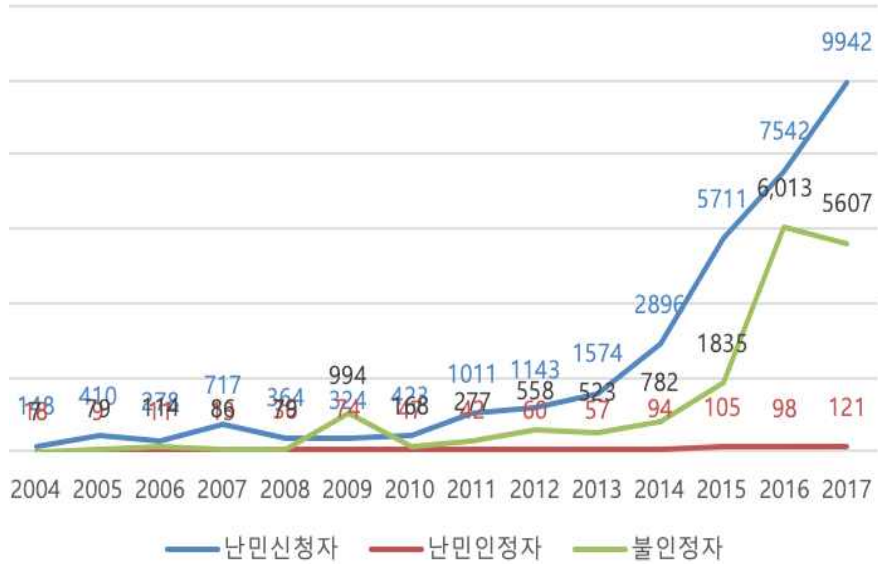
나. 한국사회의 난민 현황

9,942건	2017년 한 해 동안 총 9,942건의 난민 신청이 전국에서 접수 되었습니다.
121명	2017년 한 해 동안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121명입니다.
91명	2017년은 재정착난민을 제외한 심사종료자 6,015명중 단 91명만이 난민지위를 인정 받았습니다.
32,733건	1994년부터 2017년까지 접수된 누적 난민 신청은 총 32,733건 입니다.
792명	1994년부터 2017년 까지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792명입니다.
1.51%	2017년 난민인정률은 1.51%입니다.
1,474명	2017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인도적체류자는 총 1,474명 입니다.

4 대중단 이주·인권협의회 심포지움 “종교인의 관점으로 보는 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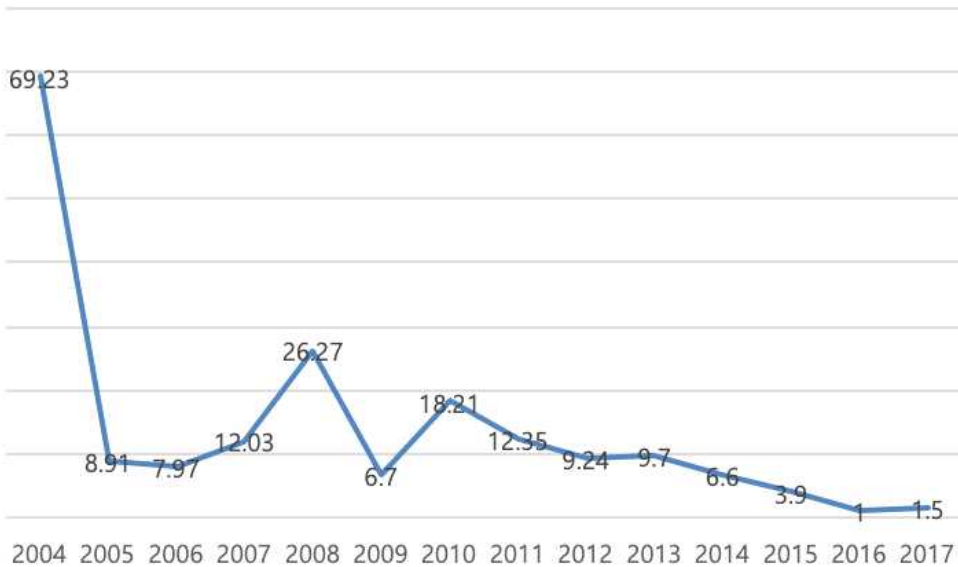
[그래프]1연도별 난민 신청, 인정, 불인정 추이 ('04~'17.12)

(단위: 건)



[그래프]2난민법 시행 전·후 연도별 난민인정률[1] ('04~'17.12)

(단위: %)



[표]4최근 6개년 연도별 난민신청자 국적국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국가	신청	국가	신청	국가	신청	국가	신청	국가	신청	국가	신청
중국	1,413	이집트	1,002	파키스탄	1,143	이집트	568	시리아	295	스리랑카	309
이집트	741	중국	907	이집트	812	파키스탄	396	파키스탄	275	파키스탄	242
파키스탄	667	파키스탄	809	중국	555	중국	360	나이지리아	206	시리아	146
나이지리아	486	나이지리아	324	시리아	404	시리아	204	네팔	90	우간다	56
카자흐스탄	정보 없음	네팔	217	나이지리아	265	나이지리아	202	카메룬	77	버마	32
방글라데시	383	시리아	171	네팔	236	카메룬	107	남아공	74	방글라데시	32
시리아	103	방글라데시	정보 없음	스리랑카	66	네팔	84	에티오피아	68	에티오피아	15
기타	6,149	기타	3,765	기타	1,686	우간다	84	방글라데시	45	콩고 DR	10
						라이베리아	70	스리랑카	26	이란	4
						방글라데시	62	수단	11	중국	3
						스리랑카	21	버마	11	기타	294
						미얀마	18	코트디부아르	11		
						에티오피아	18	콩고 DR	8		
						코트디부아르	18	기타	377		
						이란	17				
						콩고 DR	14				
						기타	653				

4 대중단 이주·인권협의회 심포지움 “종교인의 관점으로 보는 난민”

[표]5 거점 사무소별 난민신청 현황

연도	합계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제주	외국인 보호소	인천 공항	인천	기타
2008	364	282	24	0	33	0	10	0		15
2009	324	276	5	0	24	0	11	0		8
2010	423	403	1	0	3	1	13	0		1
2011	1,011	1,003	0	0	0	0	8	0		
2012	1,143	1,132	0	0	0	0	11	0		
2013	1,574	1,435	15	0	16	0	8	15		112
2014	2,896	2,040	49	114	140	318	0	27		208
2015	5,711	2,456	0	621	553	227	0	284		1561
2016	7,542	6,224	350	439	150	295	31	63		
2017	9,942	6,448	326	409	175	312	24	21	2,227	

다. 제주 예멘 난민 피난 및 정부 대응 진행경과

- 4월 30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도 내 무비자 입국 난민신청자 거주지역 제한
- 5월 3일 제주의 소리, 예멘난민 관련 보도 시작 “예멘 76명 집단 제주행”
- 5월 24일 예멘난민에 관한 소모임(비공식)
- 5월 31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가 31일 오후 3시 제주도청 앞에서 주최한 불법난민 반대집회
- 6월 1일 예멘을 제주 무사증 불허국가로 추가
- 6월 초 제주예멘난민대책위 매일 회의 개최 결정 - 긴급상황 대비
- 6월 5일 예멘난민 호텔 계약 만기가 다가옴, 외국인청-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나 거주지제한조치 표기
- 6월 7일 예멘난민 텐트 노숙 발견, 외국인청에 고지함, 외국인청 - 취업알선대책 고민중, 노숙하는 예멘인들 한림수협으로 취업매칭시도
- 6월 11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취업설명회 계획 발표(14일, 18일 2회, 어선원, 양식업, 요식업에 제한한 취업 허가발표)
- 6월 14일 1차 취업설명회
- 6월 15일 제주지역 예멘난민을 대책위 구성을 위한 간담회 : 대책위구성을 위한 소위 구성

- 6월 18일 2차 취업설명회, 청와대 난민반대 청원 문제 확대, 제주도/제주의국인청/제주경찰청 공동기자회견, 제주도지사 난민문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천명
- 6월 미취업, 취업 부적응자 및 계약 파기된 난민 발생
- 6월 20일 난민 소위 개최(범도민대책위 제안서 마련/전국단위 연대단체 제안), 난민네트워크에서 세계난민의 날 기자회견 ; SNS상 난민반대 여론 확산
- 6월 22일 제주도지사 난민문제를 제주도만 떠안을 수 없다고 발표,
- 6월 24일 제주도지사 난민문제 중앙정부/대통령과 협의하여 해결하겠다고 발표, 예멘난민 다시 텐트 노숙자 발견 소식 들려옴.
- 6월 26일 제주범도위 결성
- 6월 29일 법무부차관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 관련 조치 상황 및 향후 계획’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
 - *이후 아랍어 통역 및 난민전담공무원 충원을 통한 심사
 - *국회의원들의 난민법 절차보장 축소 취지의 다양한 발의
 - *난민반대 시위 개최
 - *난민협오취지 협박등 SNS 다수 발생
- 8월 20일 난민법 관련 박상기 법무부장관 청원 답변
- 9월 14일 23명에 대해 난민불인정결정 및 인도적 체류결정

3. 현재 대한민국 난민정책의 구조와 일반적 문제점

가. 구조

난민정책은 크게 나누면 4가지 분야에 관한 정책으로 논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난민정책의 필수적 4가지 요소라고도 부를 수 있다. <1요소> 난민정책에 관한 기초와 장기적인 계획, <2요소> 난민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절차에 관한 정책, <3요소>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와 같은 유관 체류자격 및 아동, 여성, 장애인과 같은 표지를 지닌 난민 그룹에 대한 처우 및 정착에 관한 정책, <4요소>협오와 차별을 방지하고 공존하는 사회의 조건을 만드는 정책이 그것이다.

4 대중단 이주·인권협의회 심포지움 “종교인의 관점으로 보는 난민”

현 정부 들어서 5개년 난민정책 즉,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18-2022가 수립되었다. 위 정책의 13개 중점과제중 IV-5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정책 추진이 수립되었고 그 내용은 [과제 1]난민의 한국사회 통합체계 구축, [과제 2] 난민심사 체계 고도화, [과제 3] 난민위기에 대한 국제적 공조 강화다. 상세 정책과제가 상세하지 못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위와 같은 포괄적인 그림을 그대로 다루고 있지 못한 것이 우선적으로 지적할 문제다. 예를 들어, 필요한 난민정책 4요소중 4번째는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가장 강력하게 제주 피난 예멘 난민들의 이슈에서 시급한 주제로 부각되었다. 이는 사실 난민정책이 정책적 볼륨의 면에 있어서 출입국외국인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난민정책의 큰 기초와 방향에 대해 역대 정부 모두 커다란 관심과 이해도가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 일반적 문제점 개관

일반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문제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위상에 심각하게 미달하는, 미흡한 난민보호의 현실과 중장기계획의 부재다. 난민정책은 앞에서 보듯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난민인정절차를 소극적으로 관리하는 것만이 존재했다. 둘째, 난민인정절차의 공정성의 부족 및 인프라 부족 문제다. 난민인정절차를 통해서도 난민이 난민으로 확인되어 보호받기가 너무나 어렵고, 이와 관련된 정부의 인프라가 극도로 부족했다. 셋째,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재정착 난민의 처우 문제다. 이미 생활의 터전이 확보된 예를 제외하고 난민신청자는 난민 인정절차의 전체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심사를 대비한다는 것, 혹은 한국사회에 평화롭게 정착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인도적체류자도, 난민인정자도 한국사회 내에서 그 자체로 충실하게 살기 어렵다. 넷째, 혐오와 차별의 방지에 대한 정책의 부존재 문제다. 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외국인/난민 혐오-차별 방지를 위한 다양한 층위의 정책이 형식적으로도 존재하지 않았다.

4. 난민정책에 대한 정부의 발표 - 제주 피난 예멘 난민에 관한 정책의 문제점

가. 정부가 전달한 ‘난민’에 관한 대국민 메시지의 위험성

이번 국면은, 난민에 대한 메시지의 국민적 관심도가 가장 극대화된 최초의 시점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선명한 정책적 메시지가 필요했고, 그 방향이 중요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공식적 입장과 이에 관련된 정책들이 전한 정무적 관리 일변도의 메시지는 부족하거나

위험했고, 향후 난민정책의 장기적 설계와 추진에도 결국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생겼다.

1) 6. 29. 법무부차관 발표 보도자료 개요

-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설명
- 국제법 및 국내법적 의무는 있으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음
- 첫 번째 대책 : 엄정, 정확, 신속한 난민심사절차진행(심사관 추가 투입, 신원검증 철저)
- 두 번째 대책 :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 추진
- 세 번째 대책 :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네 번째 대책 : 난민심판원 신설로 이의제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
- 다섯 번째 대책 : 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교육 강화

2) 8. 20. 법무부장관 '난민법 관련' 청와대 청원 답변 개요

-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시켜드릴 수 있을지 고민한다며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청원에 대한 답변 발표
- 첫 번째 대책 “국민 불안 해소 방안과 난민제도 악용방지 대책”(엄격심사, 재신청제한/불회부제도도입/브로커 처벌 명문화등)
- 두 번째 대책 :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 인프라 구축 계획” 심사 전문인력 확충, 국가정황정보 수집분석 인력, 난민심판원 설치등
- 세 번째 대책 : 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 자립할 수 있도록 하되, 법질서/문화가치등을 훼손시 난민인정취소, 철회 및 강제송환 가능여부를 난민법에 명문화할 예정
-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인 것을 인식하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2018. 4.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위 '제주 피난 예멘 난민'들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정부의 잘못된 Key message 전파다. 우선 난민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선명한 난민보호의 취지가 아닌 상황의 정무적 관리에 대한 것이었다. 실제로 예멘 국적 난민들은 보호의 필요성이 명백한 난민(난민법 제2조 제1호)7), 최소한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준난민'(난민법

7) .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

4 대중단 이주·인권협의회 심포지움 “종교인의 관점으로 보는 난민”

제2조 제3호⁸⁾으로 보호할 여지도 있음)임에도, 위의 두 차례 공적 발표를 통해서 내놓은 발표들은 영동하게 예멘 국적 난민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의 대책이었다. 난민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난민에 대해 ‘잘못 우려’하거나 이를 ‘활용’하려는 집단을 무마시키기 위한 대책이었던 것이다.

①더욱이 난민혐오취지의 인종주의에 기반한 목소리 즉 ‘국민이 먼저다’라는 목소리 혹은 ‘가짜난민 추방하라’를 ‘정당한 국민의 목소리’로 수긍한 내용이었던 점⁹⁾, ②제주도 내 예멘 난민들 출도제한 처분을 통해 난민들을 ‘위험한 타자’이자 국민의 안전과 대립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낙인찍은 점¹⁰⁾, ③제주 피난 예멘 난민 이슈를 기화로 촉발된 난민과 무슬림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방지에 대해서 사실상 무대응 한점¹¹⁾ 등은 ‘난민에 대한 최초의 인상(First Impression)’을 한국사회에

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8) 3.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인도적체류자"라 한다)이란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9) 여기에는 기존의 배경이 사실 작동한다.. ‘난민보호가 아닌 출입국관리’에 출입국관리의 하위분야로 포섭된 난민정책 즉, ‘남용적 난민’을 차단해야한다는 논리가 사회 일각에서 발현된 ‘가짜난민(허위 난민)’이란 혐오표현의 낙인까지 정부도 일견 수용할 공명지점을 만들었다.

1994.부터 현재까지 난민심사제도에서의 초점은 ‘남용적 난민’을 걸러내기 위한 심사이지 난민을 찾아서 보호하려는 심사가 아니었다. 이는 <조직구조상> 난민정책 일반 및 난민심사제도를 운영하는 주체 자체가 출입국관리(국경관리, 체류관리)를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부처였기에 그 규범적 갈등을 관리하지 못했던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고, 실제로 <개별 공무원>들이 그와 같은 규범가치관 하에서 일할 수밖에 없어서 이기도 했다.

이에 제도 자체의 취지가 왜곡되어 ‘난민제도 자체’를, 그 고유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기 보다는 출입국관리에 균열을 가져오는 제도로 이해하려는 판단이 다양한 실무에 녹아 있다(ex : 난민제도 때문에 국경이 무너진다. 난민제도 때문에 체류관리가 망가진다 등)

또한, 이에 근거하여 정부는 구체적인 판단 하에서도 난민제도를 ‘난민보호’가 아닌 ‘남용적 난민 색출’에 초점을 두고 운용하여, ①심사기준이 국제기준에 비해 가혹하고, ②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처우에 관한 권리보장에 있어서 시혜적인 것으로 보수적 접근해왔다.

결국 ‘남용적 난민’이란 정부의 기존 시각과 용어가 ‘가짜 난민(허위 난민) - 난민과 난민이 아닌 사람을 법적해석을 통해 가릴 뿐이지, ‘가짜/허위’가 존재하지 않는데, 모든 주장을 ‘가짜’라고 낙인시킴 - 이라는, 활용되어서는 안되는 난민혐오취지 개념으로 그대로 활용되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제지를 하지 못했다.: 정부가 사실상 그대로 갖고 있던 프레임이 연장된 것이나 다름없다.

10) 거주지제한으로 인해 특별히 취업연계를 예멘 국적 난민들에게 직접 당국이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음에도,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일부 직종에서는 제외했다’라고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11) 주무 업무가 아니므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일부 Fake news에 근거한 차별을 ‘유

부정적인 형태로 각인시키게 된 계기가 되었다. 국민들에게 다가온 인상은 ‘난민은 관리, 통제되어야 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가짜난민들이 들어올 수 있고, 무슬림에 대해 항간에 도는 정보나 편향된 보도들도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가 되었다.

종전엔 ‘한국에 보호가 필요한 난민(우리가)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제고가 긴요했다면, 이젠 ‘난민(우리는)은 위험하지 않다’까지 난민들이 설득을 해야하는 어려운 산이 생겼다.

나. 1요소 - 난민정책에 관한 기초와 장기적인 계획의 부재가 만든 상황관리적 정책

앞에서 주장한 것처럼 정부가 ‘제주 피난 예멘 난민’에 관한 어떠한 형태로든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장기적인 정책’의 세부과제로 작동한 것이 아니었다. ①한국정부는 그동안 ‘난민을 어떻게,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경제, 사회, 문화적 평가 연구가 없었다. 난민보호라는 국제적 과제에 관해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과 의의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없었다. 이에 난민법 시행 이후 매년 1.5배 이상 증가하는 난민신청자로 인해 정부는 ‘난민신청자 수 증가 억제’ 및 ‘난민제도 오남용 방지’에 초점을 맞춘 정책기조를 운용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난민심사관 수의 증가와 같은 신속성 확보의 장기적 과제는 미진했다.¹²⁾

결구 이와 같은 연장선 상에서 500여명의 난민이란 숫자는 정부에게도 종전의 방법과 다른 새로운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결국 우선 ‘막는 것’이란 정책적 방향- 종전의 소극적 난민보호 / 난민신청자 수 증가 억제라는 기초와 부합하는 - 이었다. 예멘을 무비자 입국 가능국가에서 제외해서 추가 유입을 우선 막고, 난민들을 육지로 나올 수 없도록 거주지 제한을 하여 막고, 난민심사에 여지를 뒀으로서 다수의 정착가능성을 막는 것이²⁾단기적이고 집중적인 난민 유입에 관한 상황대응 매뉴얼도, ³⁾중앙정부와 지자체관의 업무분담과 구축된 협조체계도 없었다.

다. 2요소 - 난민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신속, 공정한 절차에 관한 의문

예멘 난민들은 국제적으로 ‘강제송환’할 수 없는 대상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보호의 형식과 양태는 개별 심사절차를 통해서 난민협약상 난민요건 해당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긴 하나, 근본적으로 예멘 국적 난민들은 송환치 않고, 한국에 체류를 허가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체류를 허가해야한다면 가급적 정착이 원활하도록 박탈된 자격을 회복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언비어 배포에 주의하자’라는 정도의 톤은 유지하되, 차별금지에 대한 메시지가 부존재했다.
12)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동력이 이번 계기로 생긴 것 같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대중단 이주·인권협의회 심포지움 “종교인의 관점으로 보는 난민”

난민인정절차의 요체는 ‘신속성과 공정성’이며, 이를 보다 축약하자면 ‘난민으로 보호할 사람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호하고, 난민으로 보호하지 않을 사람은 신속하게 보호하지 않음을 선언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극도로 낮은 인정률과 장기대기’로 표현된 일반적 문제점은 제주 피난 예멘 난민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났다.

①심사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사실상 종료되었지만, 심사가 종료되었음에도 결과가 통보되지 않는다. ②‘결과’의 측면에서 23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지위 부여가 있었으나, 난민인정심사에서 고려되어서는 안될 다양한 부차적 요소들을 통해 마지노선인 인도적 체류의 부여마저 자의적으로 거부할 여지를 남겨 놓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에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체류가 허용되고 보호체계 안에 편입되어야할 예멘 국적자인 난민들이 ‘신속’하게 결과를 얻어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특별한 법률조력 없이도 ‘공정’하게 정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보호가 당연한 사람들에 대하여도’ - 결코 남용적 난민신청자가 아님에도 - 외부적으로 ‘엄정한 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한채, 심사결과가 지연되고, 그 결과도 엄밀한 법적인 판단¹³⁾이 아닌, 정무적 고려가 반영되는 판단이 될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난민법을 운용하고 있는 아시아에서의 선도적인 국가인 대한민국에 보호를 구한 난민들에 대해 대한민국이 내놓을 답이 과연 무엇인가.

라. 3요소의 부재 -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등의 처우와 정착지원에 관한 정책적 공백의 노출

‘500명의 난민’은 결코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대량 난민 유입(Mass influx)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즉, ‘난민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결코 국민의 다수의 목소리라고 수렴할 수 없는 소위 청와대 난민반대청원으로 나타내는 ‘난민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기에’였다. ‘노숙에 이르게 방치된 난민들’이 염려된 것이 아니라, 난민들로 인해 ‘불안해한다는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방안이 염려되었던 것이다.

1) 난민신청자의 심사기간동안의 생계지원방안

<난민신청자>의 지원 - 난민인정절차 기간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법적, 경제적 방편의 제공 - 에 대한 현행 난민법의 체계는 ‘난민신청 후 6개월 이전까지의 선별적 생계비 지원’, ‘그 이후

13) 인도적 체류지위의 부여도 고문방지협약의 이행법률로서 난민법 제2조 제3호가 해석되는 이상, ‘당해 정의에 해당하면 보호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 그 정의에 해당함에도 타사고려로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재량의 일탈 또는 남용이어서 위법하다.

의 단순 노무 업종에 한정된 취업허가'의 틀로 마련되어 있다. 시계열적으로 보면 제도가 잘 완비된 것 같지만, 이는 사실 잘 작동되지 않는다. 생계비 예산도 완편되어 있지 않고, 그마저도 선별적 가점을 통과하지 않으면 줄 수 없다. 실무상 가족을 미동반한 성인 남성은 받기 어렵다.

설령 주더라도 그 금액이 의식주를 해결하기엔 충분치 않아 '생계비'¹⁴⁾로 불리울 수 없는 것은 차치하고, 제주 피난 예멘 난민들의 경우 현재의 미공개된 심사기준에 따라도 대다수 생계비를 받기가 불가능한 '성인 남성'들이다. 정부는 생계비 외엔 지원근거가 없다고 하고, 생계비, 난민들이 '먹어야 하고', '자야하는' 순간은 매일 닥쳐오나 해결방안이 없다. 결국은 6개월 이후에만 가능한 취업허가를 예외적으로 난민신청자들에게 해줄 수 밖에 없고, 그마저도 한국어/영어를 구사할 수 없는 아랍인 남성들의 취업가능 직종, 이에 더해 취약계층 고용시장을 침해하지 않는 직종을, 제주도에서 찾기로 상당히 어려웠고, 숙식제공까지 가능한 곳을 찾으려다 보니 정부에서 직접 취업연계를 일부 업종¹⁵⁾에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6개월 이후에 가능한 '취업허가' 역시 난민신청자의 절차동안의 생계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볼 때는 정부는 별도로 생계를 지원하지 않을테니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며 난민심사기간을 기다려라'라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 냉엄한 제도다.¹⁶⁾ 더욱이 체류관리를 중시한 현재의 관점에서는 '내국민 고용시장 저해 방지'라는 목표하에 '단순노무업' - 그것도, 재량적으로 변경되는 - 에만 가능하다. 제주도 내 적정한 취업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 혹은 취업자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노숙하는 난민들이 늘어나니 결국 정부에서는 직접 취업연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많은 수의 난민들이 적응할 수 없었던 일자리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었고, 정부는 취업허가도 해주고, 취업연계까지 해줬으니 모든 책임을 다 졌다는 내심의 입장을 피력했지만, 엄존하는 난민들의 처우에 관한 공백은 시민단체, 종교단체들이 메꿔가야 했다.

현재의 난민신청자의 처우에 관한 정책은 결국 '이미 한국에서 생활관계를 형성한 난민신청자로서 취업허가만 얻을 수 있으면 현재의 직종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국으로 급박히 피신하여 아무런 생활관계가 없는 난민'(특히, 성인 남성이며 가족미동반일 경우 더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체계다.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높은 난민신청자의 경우 더욱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체계다.

14) 생계보조금 정도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15) 어업, 양식업에 대해 최초 지원이 있었다.

16) 이와 같이 '난민인정절차를 운용하는 한 반드시 운용되어야 하는 생계보장 제도'의 의미, 제도적 취지와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 '난민신청자 생계비'에 관한 부정적 정서 또는 가짜 뉴스가 활발하게 퍼졌던 것이다.

4 대중단 이주·인권협의회 심포지움 “종교인의 관점으로 보는 난민”

특히 이는 [지자체와의 협업과 협조의 근거, [정부의 기타 예산의 전용근거 마련]에 대한 대책이 없었던 것에서, 더욱 협애성이 분명히 노출되었다. 난민들은 제주도에 살면서, 한편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사는 것인데 이에 관한 협업/분담에 관한 아무런 계획이 없었고, 생계비와 취업허가라는 틀 외에 난민신청자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 제주도 내 시설이용에 관한 체계가 없었던 것이다.

2) 인도적 체류자의 정착지원 방안

앞으로 대다수가 받을 것으로 보이는 <인도적 체류>의 처우는 어떠한가? 일부 개선¹⁷⁾의 조짐이 있긴 하지만, 사회보험체계 안에 완벽히 들어오기 어렵고, 여행증명서의 발급도, 배우자 및 미성년 가족과 함께 살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다. 오로지 취업허가를 할 수 있다는 규정 뿐이다. 실질적으로 오는 변화는 난민신청자 신분이었을 때와 달라진게 없다. 체류기간 연장을 받는 기간만 조금 더 길어졌을 뿐이다. 국적취득을 위한 별도의 용이한 경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살게는 하되, 정착할 수는 없게 만드는’ ‘부유하는 존재로서의 난민’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 예멘 난민들의 향후 정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송환만 하지 않는 것에 만족했던 1,200명 이상의 인도적 체류지위를 보유한 시리아 난민들이 ‘권리(자격)의 박탈’ 속에 이미 안정적 정착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예멘 난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착을 안정적으로 도울 것인가? 인도적 체류지위의 처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장기적 관점에서 정착유도 방안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법에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인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 생활이 가능한 자격 회복’ 수준 - 강제송환하지 않고 체류케 하는 것,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형식적 자격을 주는 것 등 - 외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한 종합적 체계 - 언어교육, 취업알선, 주거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 가 전무한 상황에서, 인도적 체류자로 보호하게 될 예멘 난민들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한 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도록 할 것인가.

마. 4요소 - 혐오와 차별의 방지 및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의 완벽한 공백

청와대의 ‘제주 예멘 난민 반대’ 취지 청원에서 나타났던 난민혐오는 기실 그 근원이 ‘타자와 공존해본 경험이 실질적으로 없는’ 한국사회의 인종주의가 배경에 있는 것이고, 일부 정략적/기타 고려가 포함된 조직적인 혐오 선동의 일환이기도 했지만 한편, ‘낯섬’에 대한 몸의 반응으로도 볼 수 있었다.

17) 오랫동안 요구되었던 지역건강보험의 가입자격 근거 마련 등이 그것이다.

또한 ‘난민은 이미 존재하는 사회의 불안을 대리하는 대리자다’라는 언명¹⁸⁾에서 볼 수 있듯, 난민들에 대한 혐오나 불안은, 이미 존재했던 한국사회의 불안 예컨대, ‘여성의 안전’, ‘취업의 불안’과 같은 한국사회의 고유의 문제가 난민에게 투사된 것이기도 했고, 결국 한국사회의 많은 숙제가 난민들에게 쏟아진 국면이었기도 했다.

예멘 난민에 관한 무수한 혐오선동이 분명한 가짜뉴스가 난립해도, 오프라인에서 공존의 조건을 해하는 선동이 이뤄져도, 온라인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난민에 대한 협박이 이루어져도 정부는 별다른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지 않았다. 청원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같은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이를 긍정하는 신호를 보냈을 뿐이다. 그와 같은 소수자 혐오는, ‘옳지 않다’라는 선언전 메시지가 정책결정자와 시민사회에서 동시에 나오지 않는한, 계속해서 여타 소수자 집단에게 전이되고, 그러한 전이는 ‘집단’을 차별화하고 사회의 테두리에서 배제하는 문제를 만든다. 과연 국민에 비해 열위된 집단으로서 난민이 그려진 상황, 구체적인 피해가 난민에게 가해진 상황에 대해서 방치된 상흔을 앞으로 어떤 형태로 수습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더 이상 난민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전제한 정책은, 이제 ‘난민’에게도, ‘시민’에게도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난민(비국민)과 국민이 공존하는 한국사회, 두 집단이 국적의 소유라는 계기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난민과 국민 모두 한국사회의 구성원인 시민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5. 평가를 바탕으로 한 향후의 난민정책에 대한 제언

가. 정부의 ‘난민은 혐오나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다’라는 취지의 선명한 정책기조 확립과 메시지 전달

단기적으로, ①현안이 된 예멘 난민들에 대한 심사 및 다양한 공보기회, ②난민반대취지 목소리 중 증오선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국민의 목소리’로 청취하지 않고 공존의 조건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해야한다. 이에 관하여는 난민보호가 갖는 의의 - 법적, 역사

18) The Atlantic, “Where Does Fear of Refugees Come From?”(Heather Horn), 2016. 4. 1
7
<https://www.theatlantic.com/international/archive/2016/04/refugees-crime-rumors/480171/> “Natalia Banulescu-Bogdan of the Migration Policy Institute echoed the point. “Immigration,” she said, can act as “a proxy for existing insecurities.”

4 대중단 이주·인권협의회 심포지움 “종교인의 관점으로 보는 난민”

적, 국제정치적, 국제관계적, 도덕적 - 에 대한 깊은 탐구와 이에 대한 난민정책 집행 유관단위의 일관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출입국외국인정책기본계획 내에서, 또는 새롭게 신설해야 할 난민정책기본계획 내에서 ‘다문화교육’ 외에 난민에 대한 이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이에 관한 제사회 영역에서 촉발되었던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다양한 정책단계안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난민제도 자체의 후퇴가 아닌, 명확한 난민보호 취지 방향으로의 제도개선

두 차례의 정부 입장 발표에서는 ‘난민인정자 정착 - 주로 한국사회 법질서 준수 교육 차원에 한정되었으나 - 에 관한 정책적 공백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엄정하고 신속한 심사’ 제도를 만들어 한국의 난민제도의 오용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을 이뤘다.

앞에서 일반적인 문제, 그리고 제주 피난 예멘 난민에 대한 정책적 문제를 4요소의 측면에서 평가하였던 결과는 ‘한국이 난민보호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적극적인 난민보호 취지의 정책이 아닌, 현재의 협애한 정책적 기초를 더욱 협애한 형태로 발전시킨다는 취지의 정책은 한국 정부가 현재 택해야 할 정책적 방향이 아니다.

제도의 오용가능성에 관한 문제는 인프라를 양과 질 모두에 있어서 충분히 구축하고, 신속, 정확한 심사를 가능토록 하여 제도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가야 하는 것이지, 난민의 박해의 위험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은채 현재의 제도를 난민보호의 방향에 역행하는 형태로 후퇴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 난민심사자체를 난민정책과 분리한 독립된 단위에서 다루도록 하는 방안의 고려

인정난민에 대한 확인과 재정착난민에 대한 수용은 이민정책의 하부 카테고리에서 다뤄질 수 없다. 그렇게 접근할 경우 난민은 기존의 출입국관리, 체류관리를 저해하는 이질적 요소, 가급적 축소되어야 할 요소로만 다뤄질 뿐이고 이는 심사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 이에 인정난민을 확인하는 심사의 일부단계는 난민정책을 집행하고 수행하는 것과 별도로 독립되어 엄밀한 법적 판단으로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캐나다의 사례를 고려하여, 1차 난민인정심사를 실질적으로 독립된 단위에서 다루게 하거나, 2차

이의신청심의회에 대해 현재의 난민위원회, 논의되고 있는 난민심판원의 위치를 출입국관리단위와 독립된 곳으로 명확히 분리시켜 오로지 규범에 따른 심사를 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라. 난민신청자의 심사기간동안의 처우에 대한 실질적 연구 및 개선

난민인정심사제도를 운영하면, 난민신청자를 그 기간동안 ‘체류’하고 ‘생존’하도록 해야한다. 그 의무와 내용은 다양한 정책적 고려가 반영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체류’와 ‘생존’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난민인정심사제도를 운용하면 이는 간접적인 강제송환금지원칙을 간접적으로 위배하는 것이 되고, 난민인정심사제도의 근간 자체를 흔들며 형식적인 것으로 만든다.

한국정부가 운영하는 난민정책이 대외적인 공보 활용목적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확인하여 보호하는 정책으로 기능하려면, 난민신청자의 심사기간동안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난민신청자의 처우를 더욱 많이 보장할수록 박해의 위험이 없는 난민신청자들의 제도 유입이 많아진다는 우려로 되려 진입장벽을 높이고 난민신청자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하되, 난민인정을 받으면 그때 확실하게 보호하자라는 태도를 취한다. 이는 처우를 제한하여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제도를 만드는 형태로 해결해야할 문제다.

기실 현재까지의 제도는 ‘이미 형성된 사회관계’가 있던 장기체류 난민신청자들에게는 작동하나 ‘급박하게 탈출한 난민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의 공백을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돌출시킨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관한 연구,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생계비, 취업허가와 관련된 재설계(예컨대, 현재상태에서의 확대, 또는 선별적 생계비지원과 취업허가의 난민신청직후부터의 실시¹⁹⁾)를 하고, 그 외의 매우 부족한 숫자만 이용이 가능한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에만 편중된 긴급구호 방안을 만들고, 지자체와의 협업근거, 시민단체들과의 협업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마.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의 실질적 정착지원에 대한 life-time 지원방안의 고민

한국사회의 영구적 구성원으로 확인된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서는 정부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바, 현재의 국면에서 예상할 수 있는 제도진단을 통해, life-time 전체를 고려한 지원의 고민이 필요하다.

19) 다만 이 경우는 난민신청과 접수, 심사의 개시요건에 관한 고민도 동반될 여지가 있다.

4 대중단 이주·인권협의회 심포지움 “종교인의 관점으로 보는 난민”

북한이탈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탈북자(North Korean Refgee)에 대한 지원은 사실 비록 정책적 결은 다르지만 이미 한국정부가 하고 있는 난민에 관한 정착지원이다. 결혼이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도 이미 유사한 정착지원이다. 이민정책의 다양한 단위가 각 부처별로 분할되어 집행되기에 생기는 장기적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초기의 ‘언어교육, 취업알선, 주거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 이에 관해서는 주로 미국이나 북유럽 국가의 재정착 난민 정착지원에 관한 선례를 연구하여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난민인정자나 인도적 체류자 역시 마찬가지로의 정착지원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초기 정착지원 이후에는 ‘귀화’, ‘가족결합’에 관한 현재의 공백을 재검토해서 국적취득을 간이하게 하고, 배우자 및 미성년자에 대한 비자, 입국, 체류에 대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 이산가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정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아니던가.

바. 난민혐오 자체를 규제하고, 이에 관한 주무부처를 명확히 하는 다양한 법제 도입

국제사회와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시행 검토 혹은 일본의 재일 조선인에 관한 혐오선동금지에 초점을 맞추어 난민포함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선동’금지, 국가와 지자체의 방지대책 수립을 명시한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과 유사한 이른바 ‘혐오선동금지법’ 제정 및 시행을 검토해야한다.

차별과 혐오가 ‘다양성이 존중되는’ 한국사회의 실질적 모습과 공존의 조건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 고민과 이에 대한 정책수행 단위가 형성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독립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와 사후적 규제외엔 이에 관한 정책형성 및 집행단위가 없는 상태인바, 이를 직접적으로 정부의 주무부처를 만들어 담당케 해야한다. 난민과 국민을 이항대립으로 설정하지 않고, 현재의 국면을 통해 발생된 문제들을 분석하고, 이에 관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계기들을 연구, 정책수립, 집행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사. 시민사회 / 종교계의 과제 - 난민을 인권옹호 영역으로 인식하고 중장기적 계획 속에 연대와 지원 모색

그 전까지의 난민옹호활동은 난민인권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이주진영과 겹치거나, 변별점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한 법제 개선 / 개별 난민 조력 / 난민그룹 조력 / 신청자 - 인도적 체류자

- 난민인정자의 한국 사회 정착 지원과 같은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난민옹호활동은 단선적 제도 위에 올라가 있는 난민들의 절차 진행과, 이에 기반 한 일부 처우 지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인간으로서의 난민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포괄적인 과정 전반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이에 관하여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고 본다. 첫째, 한국의 난민정착은 단순한 정착지원만이 아니라 법제개선과 같은 제도개선을 위한 옹호활동과 병행해야한다. 안정적 체류 지위가 확보된 재정착 난민과 같은 사례가 아닌 경우(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긴급구호와 체류지원, 정착지원에 관한 활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대부분이 송환되거나, 가족이 헤어지거나, 미등록체류자의 상황으로 엮여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민들이 정당한 안정적 지위를 확보하여 한국정부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전반적인 제도개선의 노력이 되어야 한다.

둘째, 그러나 한편, 해외의 사례를 또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난민정착에 대한 지원들, 즉, 취업지원, 주거지원, 트라우마나 의료지원, 언어교육, 지역공동체와의 연계와 같은 구체적인 정착에 관한 전반적 체계를 보다 넓은 형태로 구성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난민신청자에 관한 지원이 한국정부에게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 없어, 긴급히 한국에 도착한 난민들의 경우는 생계에 대한 지원이 전반적으로 전무하고, 이에 관한 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한 보다 각 지역별, 시민사회진영, 그리고 협의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성해야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난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해의 폭을 전반적으로 제고해야한다. 난민은 이주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강제이주자로서 이주민과 다른 부분들도 있다. 시민사회 진영 역시 난민에 대해, 타자로서 존재하는 난민의 정체성에 대해, 법적 지위와 어려움에 대해, 다양성과 타문화와의 공존가능성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고, 난민을 단순히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한국사회 내에서 뿌리 내리고 함께 살아가며 연대할 동등한 구성원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이러한 과정속에 한국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발견된 난민혐오와 깊은 인종차별의 문제를, 시민사회 진영이 앞장서서 먼저 풀어나가며, 그와 같은 혐오가 한국사회 전반으로 뻗어나가 사회의 공존의 가능성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난민과 연대하는 길은 이제 인권단체들만의 일부 과제가 아니고 한국사회 전체의 과제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제도개선과 혐오와의 대응을 해야 할 부분 뿐 아니라, 결국 난민들과 구체적으로 부대끼고 살아갈 지역사회, 시민들, 종교계, 함께 접하고 살아갈 관계와 연대의 끈을 탄탄히 만들어 나가서, 다양한 경로로 난민을 취약하게 하는 상태의 단절된 삶을 감내해야하는 난민들이 실제 다양한 관계의 끈을 한국사회 내에 탄탄히 구축해야할 필요가 있고, 이는

4 대중단 이주·인권협의회 심포지움 “종교인의 관점으로 보는 난민”

비단 난민들 뿐만이 아니라 국가와 개인 사이를 중개할 다양한 공동체가 붕괴되어 많은 수의 시민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서있는 한국사회의 지형 속에 더욱 큰 유의미한 과제가 된다.

6. 참고 - 난민들의 인권침해 사례

- **난민 A**는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을 찾아왔다.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난민제도를 남용하는 외국인이라고 하여 송환대기실에 구금되었다. 치킨버거와 콜라만 제공되고, 심지어는 그마저도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항공사 직원의 송환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도 겨우 법적 조력을 받을 방법을 찾아가며 굶어가며 버텼다. 아파도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증명하라는 얘기 뿐, 병원에 갈 방도가 없었다. 굶고,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한채 겨우 연락이 닿은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승소해서 입국하기 까지, 1년이 걸렸다. 그런데, 이제 난민신청자가 된 것 뿐이다. 난민심사는 언제 종결될지 모른다.
- **난민 B**는 종교적 박해를 피해 한국을 찾아왔다. 난민신청을 했는데, 도대체 언제 면접을 받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아내와 아이들은 지금 본국에서 두려움에 떨며 난민 B의 난민인정소식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방법이 없다. 주변의 비슷한 사정으로 탈출해온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모두 1년 넘게 심사를 기다렸는데 인터뷰를 마치고 모두 기각된 소식 뿐이다. 난민인정률이 1.5%라고 하고, 소송에서 이기기는 더 어렵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한국정부는 아무것도 난민신청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기에, 단순노동을 반복하여 체류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버틸 수 밖에 없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고, 도무지 희망적인 미래란 있는 것인가.
- **난민 C**는 면접을 갔는데, 심사관이 아무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고, “Yes or No”라고만 묻는말에만 대답하라는 고압적 태도에 당황했다. 통역이 제대로 통역을 해주고 있는지도 몰랐다. 심지어 나중에 변호사를 만나 면접조서를 확인해보니 전혀 하지 않은 말이 써있었다. 이를테면 “한국에 온 이유는 경제적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도 아무런 문제나 위험이 없습니다”와 같은 것들이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다. 본국으로 가면 기다리는 것은 고문뿐인데, 졸지에 남용적 난민신청자의 낙인이 찍혀 버렸다.

- **난민 D**는 심사결과를 기다리다가 면접일정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긴장되는 마음에 방문했다. 그런데 갑자기 여권을 보자고 하더니 여권이 위조되었다고 하면서, 갑자기 뒤에 서있는 출입국직원들을 따라가는 이야기를 듣고 가보니,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다. 위조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탈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를 충분히 설명했다는데도 구금되었다. 난민 C의 친구들은 다른 나라로 피신하여 반년만에 난민의 지위를 얻고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난민 C는 그런데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어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구금생활을 견뎌야 한다.
- **난민 E의 가족**은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에, 소송까지 하게 됐다. 솔하게 수수료를 내고, ID를 연장하고, 가족들이 함께 버텨왔는데, 어디서도 진지하게 가족의 이야기를 귀기울여주지 않았다. 도와주겠다는 변호사는 찾을수도 없고 낼 돈도 없다. 그런데 소송을 하지 않으면 ID카드를 연장할 수가 없다. 결국 법원에 직접 나섰는데 통역비를 내라고 한다. 난민 D, 아내, 아이 두명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는데만 해도 130만원 가량이 들었는데, 통역비를 내지 않으면 소송도할수 없다고 한다. 돈이 없어 불법체류자가 된다.
- **난민 F**는 전쟁터에서 피신해왔다. 인도적 체류지위라는 것을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받았다. 쫓겨나지 않는다고 해서 고마워했는데, 다시 보니까 할 수 없는게 아무것도 없다. 본국에서 결혼할 사람을 초청할수도 없고, 여행증명서가 없으니 여권이 만료되면 한국이란 경계에 갇혀 나갈 수도 없다. 대학을 가려 하니 학자금도 비싸고, 취업도 안된다. 같은 나라 사람인 난민 G는 의료보험이 안되자 출산하려고 병원에 가니 자연분만에 200만원 이상을 내야한다고 해서 무료로 낳을 수 있는 병원을 찾으러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다.
- **난민 H**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출생등록할 방법이 없다. 대사관은 무서워서 찾아갈 수가 없고, 출생신고를 받아주지도 않는다. 난민신청을 아이이름으로 해서 ID는 받았지만, 어느 국가에 의해서도 H의 아이는 서류상 존재하는 아이로서의 증거가 없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가.
- **난민 I**는 결국 4년여에 걸친 심사와 소송 끝에 최종적으로 난민인정을 받지 못했다. 돌아

4 대중단 이주·인권협의회 심포지움 “종교인의 관점으로 보는 난민”

가면 박해가 기다리는데 4년의 세월은 어디로 간 것인가. 다시 신청서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도 접수를 안받는다. 실랑이 끝에 겨우 접수를 했는데, ID를 모두 빼앗기고 출국명령을 받았다. 아이들까지 모두 ID까지 상실하자 할 수 있는 게 없다. 같은 처지의 친구들은 결국 미등록체류자가 되어 버렸다. 출입국공무원이 발견하면 아이도 함께 잡혀갈까 두려움 뿐인데,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내 인생은 망가졌지만 아이들의 인생만이라도 평화로웠으면 하는데.

- **난민 J**는 카페에서 친구와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몇 번 쳐다보았다. 잠시 후 경찰이 와서 신분증을 보라고 한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옆에서 아랍어를 하는 수상한 사람들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한다. 심지어 두명 이서 슈퍼에만 지나다녀도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내 존재 자체가 불법이고 범죄인가. 한국에서는.

난민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입장

심유환 유스티노 신부

(기쁨나눔재단 상임이사, 예수회 난민 봉사기구 한국 대표)

들어가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016년 안전성과 존엄성 (In Safety and Dignity)이란 보고서에서 말한 것처럼¹⁾, 난민 문제는 세계역사에 그리 새로운 현상은 아니며 역사적으로 인류는 난민과 이주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여러 방면으로 그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해오고 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난민문제는 항상 인류가 대면해 왔었던 문제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난민 문제를 고민하고 인류애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유럽에서 보여지는 난민문제와 미국의 이주민 정책안에서, 더 나아가 2018년 제주도 예멘 난민문제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문제를 고민하고 난민에 대한 이해와 해결책으로 문제를 접근하기보다는, 근거 없는 두려움과 악의적인 루머들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소모적 논쟁들이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난민들에 관한 이차적 문제들이 또 발생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보여지는 난민에 대한 반응 즉, 혐오와 인종차별의 현상뿐만 아니라 점차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받아들여지는 상황들은 많은 부분 깊은 우려를 갖게 한다. 여기서 확실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원하지 않은 다른 유럽 국가에서 보여지는 사례처럼 난민과 이주민 문제는 세계적인 현상이고 우리나라에도 계속해서 여러 갈등과 새로운 도전이 올 것이라 믿어진다. 이는 우리가 그동안 난민 문제에 거의 노력이 되어있지 않았었고, 난민문제에 대해 아무런 담론이나 준비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제주도 난민문제가 우리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여론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서야 난민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였고, 이 기회에 우리사회와 교회도 진지하게 난민문제를 고민하고 난민에 관한 미래의 비전(Vision)을 갖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난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응답은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인권과 국제협약에 근거한 난민문제 대처 또한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이지만, 난민에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1) Anon, 2016. United Nations Official Document. *United Nations*. Available at: 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A/70/59&=E

4 대중단 이주인권협의회 심포지움 “종교인의 관점으로 보는 난민”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과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인 접근들도 절실히 요청된다. 우리 한국사회가 난민 문제를 통해 분열보다 더 성숙하게 사회문제를 응시하고 대화하며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다양한 종교 안에서의 난민에 대한 접근과 이해 또한 한국사회의 난민에 대한 이해의 노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가톨릭교회에서의 난민

가톨릭교회의 전통과 역사는 어떻게 보면 난민과 이민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세기의 시작에서 아담과 하와는 지상낙원에서 내쳐져 새로 이주한 곳에서 자손을 번성시켰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태어나 자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살았다(창세기 12:1이하). 또, 이사악,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피난과 이민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고 번영하게 된다. 선택받은 모세는 수많은 이스라엘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이주시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냈다. 예수님 또한 성모님과 요셉 성인과 함께 박해를 피해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피난하여 난민생활을 하셨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으로나 민법에서 이방인(Stranger)들을 환영해주는 것은 의무였다. 중세시대의 세속 권력도 교회나 수도원을 성스러운 피난처 (Sanctuary)로 인정해줘서, 피난자(refugee)를 강제로 쫓아내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가톨릭교회는 가톨릭(Catholic)의 어원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보편(공통, 일반, 공변)교회의 입장에서, 또한 바오로 사도의 모습에서처럼 모든 이방인들과 난민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이다. 한국 가톨릭교회도 단지 우리민족과 한국인 개인만을 생각하는 의미의 교회여서는 안 된다.

가톨릭 사회 교리

난민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입장은 사회 교리를 통해 이해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접근이다. 가톨릭교회에서의 난민에 대한 정의는 국제협약이나 유엔난민기구(UHCR)에서의 난민에 대한 정의 (definition)보다 확장적이고 열린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유엔난민기구에서 말하는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난민협약 1951, UNHCR)에 한정하고 있으나, 가톨릭교

회는 사실상(de facto) 난민(전쟁 피해자, 잘못된 경제정책의 심각한 피해자 그리고 자연재해 피해자)과 국내 실향민 (Internally displaced persons)들을 난민으로 포함해, 국제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²⁾ 이유는 현대 사회의 분쟁과 기아, 자연재해 그리고 정치적 복잡성으로 인해 1951년에 제정된 난민협약으로는 다양하고 복잡한 피해자들을 국제법으로 다 보호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난민의 대한 가톨릭교회의 접근은 사회 교리의 근본 바탕이 되는 **인간 존엄성(Human Dignity)의 원리**와 사회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원리들인 **공동선, 연대성, 보조성의 원리**들을 사용한다.

가톨릭 사회교리는 교종(교황)의 회칙 등 여러 가톨릭교회 문헌들을 통해 시대의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성찰하면서, 복음에 맞는 판단기준과 행동지침을 제시한다. 사회교리는 가톨릭교회의 공식 교리서인 “가톨릭교회 교리서”의 제3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교회의 가르침이다. 가톨릭 신자들이 교리, 성사, 기도생활을 통해 개인적인 영성 생활이나 기도 생활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웃과 친교를 나누며 봉사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공동선을 위해 실질적으로 행동하기를 요청한다.

인간 존엄성(Human Dignity)의 원리에서 보면, 하느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며 모든 사람은 하느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 특히 난민을 포함한 약자들도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본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가 된다(간추린 사회 교리 144-148항).

공동선(Common Good)이란, 인간의 기본권을 포함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난민을 포함해 아무도 제외되지 않은 채 더욱 쉽고 충만하게 자기완성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모든 사회생활 조건들을 총칭하는 원리이다(사목헌장 26항). 사회의 구성원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에 따라 공동선을 증진시키는 데 협력할 의무가 있고, 국가 또한 평화에 대한 노력, 건전한 사법 체계, 환경보호, 음식, 주거, 노동과 교육 등등의 인간의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해 올바른 정치 제도를 만들 책임이 있다.

연대성(Solidarity)의 원리는 다시 말해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에 대한 것으로써 개인들 간에 개인과 사회, 민족들 간에 상호 의존과 유대를 바탕으로 서로 책임을 지고 돌보아야 한다는 원리이다. 연대성의 원리는 난민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됨 없이 모두가 함께 도와서 성장하고자 하는 지향을 통해 분열을 넘어 일치를 추구하며, 보편적 선익을 위해 헌신하려는 의지이다. 연대성의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 난민과 같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의 고통과 도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보완성 (Subsidiarity)의 원리는 다른 말로 보조성 또는 도움의 원리라고도 불리는데, 국가

2) *Refugees: A Challenge to Solidarity*, n 4 - 5; John Paul II, Address in Nairobi, Kenya, 6 May, 1980, n 8; Paul VI, Octogesima Adveniens, 1971, n 17; John Paul II, Annual Address to the Diplomatic Corps, 1983, n 6.

4 대중단 이주·인권협의회 심포지움 “종교인의 관점으로 보는 난민”

와 같은 상위단체는 공동체나 그 구성원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동시에 개인과 작은 단체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원리이다.

종합적으로, 가톨릭 사회교리는 국가이익이나 국가법의 관점에서보다 인간 존엄성(human dignity)의 근본적 질문을 근거로 하여 난민의 이동권과 그들이 다른 (이웃)나라에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법적 문제나 영토의 주권 문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기에 인권의 중요성을 세상에 알리고 있는 것이다. 국가에 자국의 국민을 보호할 의무와 국가의 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것은 자명하다. 동시에 난민처럼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강제로 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목숨을 걸고 국외로 탈출하는 사람들에게는 타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도덕적 권리(moral claim)가 생기며, 난민을 받는 국가와 국민에게도 공동선과 연대성 더 나아가 보완성의 원리에 근거하여 도움을 줘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것은 보호책임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에서 말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즉 어떤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자국민들을 오히려 탄압하고 인권침해를 했을 때, 국제사회가 그 나라의 주권을 잠시 보류하고, 적극적으로 인도주의적 개입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³⁾

가톨릭교회 교회 문헌

가톨릭 사회교리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은 가톨릭교회의 문헌들에 나타난다. 가톨릭교회는 사도들과 초대 교회공동체의 노력을 통해 팔레스타인지역에서 전세계로 복음을 선포했다. 특히 1492년 가톨릭 신자인 콜롬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후 식민지 개척과 함께 선교를 위해 많은 선교사들이 파견되었고, 원주민들에게 가톨릭이 널리 전파되었으며, 그에 따라 바티칸은 해외 이민 사목에 관심을 가지고 전교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사목지침들을 제시하며 사목에 관여해왔다.

20세기에 들어서 가톨릭교회는 식민지를 찾아 해외로 떠나는 것보다, 유럽으로 유입되는 이민자 숫자가 많아지면서 원주민에 대한 사목을 전담 수도회에 위임하기 시작했다.

- 특정 지역의 이민자들을 위한 사제직에 관한 교령(Ethnografica Studia, 1914): 이민 사목 전담 사제들에 대해 처음 다루었고, 이주민들에게 지역 교회에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3) 더 자세한 내용은 신문기사 참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2&aid=0001979314>

- 교황 12세의 교황령 나자렛 피난 가정(Exsul Familia Nazarethana, 1952)⁴⁾: 제 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세계는 심각한 난민과 이민의 문제를 대면하게 되고, 그들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게 되며 그 요청에 의해 이 교황령이 나오게 된다. “포악한 군주의 횡포를 피하여 이집트에서 피난 생활을 하는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의 나자렛 성가정이 이민과 순례자나 박해나 빈곤 때문에 고향과 가족을 버리고 낯선 땅으로 떠나야만 하는 다양한 처지에 놓인 모든 난민의 전형이며 보호자”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 교황령은 이민 사목을 거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교회법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다룬 첫 사도좌 문서이다. 특히 이민 사목 문제의 일차적 책임은 지역 교구장에게 있다고 규정하였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민의 권리와 이민자들의 존엄,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불평등을 극복할 필요성을 확인한다⁵⁾. 또한 평신도들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협력함으로써 이민자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도록 해야 하고, 교회가 난민, 이민, 선원, 항공기 승무원, 유랑민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적절한 사목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⁶⁾.
- 교황 비오6세의 회칙, 민족들의 발전(Populorum Proressio,1967)⁷⁾: 고향을 떠난 이주 노동자들이 따뜻한 환영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며, 그들이 고향에서 가난하게 사는 가족들을 책임지기 위해 월급을 아끼며 비인간적인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69항). 교황은 여기에서 발전을 경제적인 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올바른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것을 인간적인 것에서 분리시킬 수 없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하나의 인간이며, 그 인간들의 집단, 더 크게 인류 전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14항).
- 교황 바오로 2세: 1985년 세계이주사목대회 참가자들에게 한 연설에서⁸⁾ 난민과 이주민

4) Pope Pius XII, Exsul Familia Nazarethana, 1952.

5) The Vatican 1965, Decree Concerning the Pastoral Office of Bishops in the Church: CHRISTUS DOMINUS, proclaimed by His Holiness, Pope Paul VI on October 28, 1965, Available at: http://www.vatican.va/archive/hist_councils/ii_vatican_council/documents/vat-ii_decree_19651028_christus-dominus_en.html

6)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회교리 문헌 자료실 (2016), 현대 세계의 교회에 대한 사목현장 <기쁨과 평화>, 제2차 바티칸 문헌(1965년 12월 7일), Available at: http://www.catholicjp.or.kr/index.php?document_srl=2574&mid=lib_doc

7) Blessed Paul VI, Populorum Progression: On the Development of Peoples (March 26, 1967), Available at:

http://w2.vatican.va/content/paul-vi/en/encyclicals/documents/hf_p-vi_enc_26031967_populorum.html

8) Available at:

4 대중단 이주·인권협의회 심포지움 “종교인의 관점으로 보는 난민”

의 권리에 대해 폭넓게 말한다. 스승이자 어머니인 교회는 난민과 이주민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의 새로운 삶을 결정하도록 권리를 존중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00년 대회년 세계 이민의 날 담화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고국을 떠난 이민자들의 고통을 전세계 가톨릭교회가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담화문(Messaggio)를 발표했다⁹⁾.

- 교황 베네딕도 16세: 2009년 세계이주사목대회 참가자들에게 이주와 개발에 대한 연결을 강조했다. 진정한 개발은 연대(Solidarity)이고, 세계화(globalization)가 진행중인 세계에서 공동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공동체적인 생활을 강조한 것이다. 난민과 이주민 문제도, 세계가 효과적인 개발(발전)을 위해서 다른 문화와 대화해야 하며 정당한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교황 프란치스코: 람페두사 섬 방문(2013), 교황은 자신의 첫 방문지로 불법이민자와 난민들의 수용소가 있는 이태리 최남단 람페두사 섬을 선택했다. 성경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예처럼, 어떠한 성대한 방문 준비나 정부관료들의 도움을 마다하고, 단순한 사목자로 방문한 것이다. 교황은 밀항 등 유럽으로 가려다 목숨을 잃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고, 이 고통에 무관심한 이들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또 그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며, 봉사하는 이들은 소수이지만, 이 봉사의 행위는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연대(Solidarity)의 모범**이라며 감사의 말을 남겼다. 미사 강론 때¹⁰⁾ “자신의 안락만을 살피는 현대의 사회는 오직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고 이웃의 고통에 무감각하게 만들며 무관심의 세계화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네 아우는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며, 나에게 아무 영향이 없고, 나와 아무 상관 없는 일처럼 난민과 이주민들을 대하는 이 “무관심의 세계화”는 우리를 무책임한 익명의 사람들로 만들고 있다며 세계적인 형제애로 접근하길 호소했다.
- 교회법: 새 라틴 교회법전- 본당 사목구 주임들이 조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http://w2.vatican.va/content/john-paul-ii/fr/speeches/1985/october/documents/hf_jp-ii_spe_19851017_pastorale-emigrazione.html

9) 한국천주교주교회의-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의 2000년 제86차 세계 이민의 날 담화, Available at: http://www.cbck.or.kr/book/book_list5.asp?p_code=k5150&seq=402258&page=18&KPope=&KBunryu=&key=&keyword=

10) Available at:

http://w2.vatican.va/content/francesco/en/homilies/2013/documents/papa-francesco_20130708_omelia-lampedusa.html

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교회법 제529조), 가능한 한 그들을 위한 특수 사목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교회법 제 568조).

동방 가톨릭 교회법전- 본당 사목지는 속지주의이지만, 상황에 따라 속인적 본당 사목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교구장은 그 교구의 임시 거주자들도 돌보아 주고, 그의 보호에 맡겨진 다른 자치 교회의 신자들이 자기 교회의 예법을 보존하도록 배려해야 한다.¹¹⁾

가톨릭교회의 실질적 응답들

한국 천주교주교회의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정신철 주교는 2018년 이민의 날을 맞아 난민에게 환대, 보호, 연대의 손길을 청하며, 국민 의식개선과 인간중심주의, 그리고 국내 이주 아동에 대한 합법적 체류를 요청하며 한국 천주교회의의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었다. 특히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에서 보여준 제주교구의 모습은 모범적이었다. 제주교구 교구장 강우일 주교는 2018년 교황주일 사목서한에서 난민에 대한 배척, 외면은 인간의 도리를 거부하는 범죄라며 포용과 자비를 촉구했다. 실질적으로 제주 이주사목센터(나오미)는 임산부나 자녀가 있는 난민 가정을 우선적으로 보살피고, 신자들이 숙소와 생필품 그리고 취업 알선과 교육 등을 지원하는 등, 초기에 뛰어난 활동을 보여주었고 지금도 계속되는 지원으로 많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¹²⁾

가톨릭교회는 전통적으로 자선을 즉 실천의 모범을 강조하고 있다. 난민문제에 대해 한국 교회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실천을 제주도 예멘 난민과 관련되어 보여주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도 많은 천주교 교회 단체들이 난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국제가톨릭이주위원회(ICMC; International Catholic Migration Commission)은 미국으로 27,500명의 난민들을 현지 가톨릭 단체와 정부, 유엔과 함께 이주시켰으며, 그리스에 난민 신청을 한 6,000여 명의 지원자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특히 예수회 난민 봉사 기구 (JRS; Jesuit Refugee Service)는 51개국에서 약 733,400명의 난민들에게 긴급구호 활동을 하며, 특히 교육에 대해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2016년 12월 기준). 그밖에도 SIMN(Scalabrini International Migration Network)과 CRS(Catholic Relief Service) 등등의 단체들이 실질

11) 1990 Code of Canons of Oriental Churches, Available at: <http://www.jgray.org/codes/cceo90eng.html>

12) 제주교구의 이번 예멘 난민지원 사례는 귀중한 국내 난민 사목의 자료와 경험이 될 것이고, 차후에 평가와 분석을 통해 연구자료들을 남기는 것 또한 난민사목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

4 대중단 이주·인권협의회 심포지움 “종교인의 관점으로 보는 난민”

적으로 난민 캠프나 난민지원을 요청한 나라에서 활발하게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가톨릭교회의 리더들이 난민과 이주에 대한 옹호(advocacy)에 적극적이다. 최근 제네바 국제 카리타스 대표단은 유엔인권이사회 (UNHRC)에 시리아 알레포교구의 아우도(Bishop Audo)주교와 미얀마 양곤대교구 보(Cardinal Bo) 추기경 그리고 엘살바도르 카리타스에서 일하는 안토니오(Antonio Baños)를 각각 초대해서, 시리아 난민 상황, 로힝야 난민사태 그리고 중미의 경제와 치안 불안으로 강제 이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증언하게 하고, 국제사회에 난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의식을 불어넣어 주었다. 더 나아가 케냐 주교회의에서는 케냐 정부가 소말리아 국경에 위치한 다담 난민캠프(현재 약 55만 명의 난민이 피신해 있음)를 치안 문제로 인해 없애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 강하게 반대의견을 내고 난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케냐 정부가 더 나서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무엇보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지속적으로 난민에 대한 이슈를 세계에 던지며, 난민 문제를 관심과 사랑으로 해결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요청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공식업무를 시작한 교황청의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Dicasterium ad integram humanam progressionem fovendam)의 산하 난민과 이주 사무국(Refugee and Forced migration)은 “난민과 이민을 위한 20가지 행동 지침”¹³⁾을 발표하며, 우리가 어떻게 난민들을 도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20가지 행동지침들을 다시 “환영하기, 보호하기, 증진하기, 통합하기”라는 4가지 동사로 표현될 수 있다”¹⁴⁾고 확인하며, 사무적 전통에 따라 가톨릭교회는 4가지 동사 또는 20가지 지침에서 제안된 것들을 실현할 준비가 되어있고, 좋은 결과를 위해 각자의 책임에 따라 모두가 기여를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이주와 난민을 위한 유엔 글로벌 콤팩트¹⁵⁾ 절차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정치인, 시민단체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네 개의 동사로 묘사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전세계가 난민과 이주에 대해 희망을 주고 그들을 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치며

전반부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현실 안에서의 난민문제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13) 한국주교회의, Available at:<https://migrants-refugees.va/wp-content/uploads/2018/02/UN-Version-Korean.pdf>

14) 바티칸 방송국, 제104차 세계 이민의 날 교황 담화 전문, Available at:

[http://kr.radiovaticana.va/news/2017/08/23/_\[담화_전문\]_제104차_세계_이민의_날_교황_담화/1332331](http://kr.radiovaticana.va/news/2017/08/23/_[담화_전문]_제104차_세계_이민의_날_교황_담화/1332331)

15) 2016년 UN 정상회담(9월 29일, 뉴욕)에서 각국 정상들은 난민과 이주민을 돕고, 삶을 구하고,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그 책임을 나누기 위해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기로 선포하였고, 이를 위해 올해(2018년말)까지 난민과 이민을 위한 글로벌 콤팩트 보고서를 만들기로 함. 자세한 상황은 <https://refugeesmigrants.un.org/refugees-compact>

계속적으로 논쟁이 될 것이고, 결국 더 큰 사회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는 난민문제를 지나치게 감정적이지 않게 또는 혐오에 빠지지 않고 진지하게 대해야 하며,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비록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보여지는 난민에 대한 심한 거부감과 반대가 있더라도, 가톨릭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난민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목소리와 난민문제에 대한 옹호 활동(Advocacy)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특히, 가톨릭신자들은 가톨릭교회가 난민에 관해 어떻게 공식적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알고 있을 때, 세상을 향해 가톨릭신앙 안에서의 난민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가톨릭교회는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난민에 대한 깊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며,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해 신앙인으로서 실질적으로 난민을 돕고 연대하며, 공동선을 이루어 내라고 초대하고 있다.

난민 거부할 수 있는 교리적 근거는 없다. 그러나 함께 해야 하는 교리적 근거는 차고 넘친다.

강현욱 교무(원불교 인권위원회)

1. 해방 후 거리로 나선 선진들과 73년 만에 다시 찾아온 전재동포

1945년 해방이후 총부에서는 당시 총무부장이던 주산 송도성의 주재로 긴급 시국회의가 열렸다. 주제는 '해방을 당하여 우리들 당면 급무는 무엇인가?'였다.

회의 결과, 서울과 부산 익산역 등에 귀환하는 전재동포를 구호하기 위한 구호소를 마련하고 구호사업에 나서기로 하였다. 그리고 교단의 대표들을 선두로 '원불교 전재동포 원호회' 또는 '동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거리로 간다'라는 어깨띠를 둘러매고 거리로 나서게 된다. 해방 이후 아직 교단도 채 추슬러지지 못해 혼란한 상황이었지만 종교인으로서 전재동포 즉,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동포들을 살리기 위해 거리로 나선 것을 최일선 과제로 삼았고, 당시 80여 만명의 전재동포를 구호하게 됐다.

전재동포구호사업이 있던 지 73년 후 오늘날, 제주로 전쟁 재난을 피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며 찾아온 또 하나의 동포들이 있다. 국가 내전으로 인해 전 세계로 피난을 떠난 예멘인 28만명 중 0.4%에 해당하는 561명이 입국하여 이중 549명이 우리나라에 난민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지난 일제강점기에 백 만명이상의 동포들이 강제징용 또는 일제의 압제를 피해 중국, 러시아, 일본 등지의 먼 타국 땅에서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 속에서 난민으로 살아가야 했던 우리의 과거로 본다면 전쟁을 피해 찾아온 이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난민문제가 대두되자 광화문광장과 제주에서 현재까지 8번 이상의 커다란 난민 반대 집회가 일어

4 대중단 이주·인권협의회 심포지움 “종교인의 관점으로 보는 난민”

났으며,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은 71만명이 동의해 청원제도가 생긴 이후 최고의 기록을 세우는 불명예까지 안게 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 17일 458명의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의 심사에 대해 339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 34명은 불인정, 85명은 보류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다시 말해 정부는 단 한명의 난민도 인정하지 않았고, 34명은 잠정적인 강제송환대상이, 339명은 1년마다 재심사를 받고 상황 변화에 따라 자국으로 송환되어야 하는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었다.

2. 안정된 삶은 평화를, 불안정한 삶은 차별과 혐오를 불러온다.

우리는 유동성(liquidity)이라는 통치수단을 지닌 신자유주의 시대를 지나오며 불안정한 삶이 사람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 지 충분히 알고 있다. 그리고 현재 난민문제에 있어서 가장 악영향을 끼치는 ‘혐오’의 문제야 말로 불안정한 삶에서 나오는 왜곡된 ‘자기 보존의 투쟁’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한 제자가 소태산 대종사에게 일월상의 신앙은 어떻게 하는 지 물었다. 일월상은 원불교가 신앙하는 법신불의 진리를 형상화 한 것으로 원불교에 있어서 신앙과 수행의 표본이 된다. 소태산은 말하였다. “일월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四恩)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 만유로서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 응할 것이며...”¹⁾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서로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로 이어져 있다. 세포 하나에서부터 우주에 이르기 까지 어느 한 존재도 홀로 살아갈 수 없으며 연결되어 단 한순간도 고정됨 없이 끊임 없이 변화하기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다. 그러나 소아(小我)에 몰입되어 이러한 관계성을 망각한 사람들은 타인을 해를 끼쳐도 나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 착각하고 타인을 죽이는 행위가 나를 살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한다. 이러한 소아에 대한 집착은 내 삶이 불안정 할 때 더욱 잘 나타난다.

1) 「원불교 전서」 『대종경』 제2 교의품 4장

난민 거부할 수 있는 교리적 근거는 없다.
그러나 함께 해야 하는 교리적 근거는 차고 넘친다.

은혜의 관계성은 평등의 관계이기에 가능하다. 더 크고 더 작고 이쁘고 못생기고 잘났고 못났고 와는 상관없이, 존재 그 자체로 평등한 관계로 연결되어 서로 은혜가 되고 평화가 이루어진다. 때문에 차별은 폭력이 될 수 밖에 없다. 존재에 차등을 주어 규정 짓는 행위는 삶의 가능성을 막아 버리는 행위이기에 곧 폭력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차별에서 유발되는 혐오의 감정은 존재에 대한 거부와 증오를 담고 있기에 난민에 대한 차별은 더욱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때문에 소태산 대종사는 신앙의 한 방법인 사요(四要)를 통해 사회가 행해야 할 첫 번째 역할은 모든 차별을 배격함과 동시에 개개인들에게 있어 자력을 길러주는 시스템을 통해 삶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함을 말하고 있다.

3. 정신적 공황을 소수자에게 전가할 위험

난민문제가 여론화 됐을 때 난민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를 촉발시켰던 수많은 거짓 정보들은 극우단체가 조직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 난민유입에 대한 초기대응으로 UN난민지위협약국으로써의 의무, 난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이 아닌 출도제한(出島制限) 등의 명령은 거짓 정보로 확산된 난민에 대한 두려움, 혐오의 감정들을 가중시켜 버렸다.

현재 우리나라에 퍼져있는 이슬람 난민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의 감정들은 과대화 되어있다. 대한민국은 지형상 이슬람 문화와의 접점이 거의 없었으며, 난민에 의한 범죄, 또는 경제적 피해도 보고된 바가 없다. 오히려 난민들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난민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히 생활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난민심사 인정률은 세계 38%의 10분의1 수준인 3~4% 정도로 난민을 가장해서 테러리스트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0%에 가까우며, 고작 500명의 숫자로 남성우월적인 이슬람문화가 수용되어 여성에 대한 차별 또는 범죄가 늘어난다는 것 과도한 해석이다. 예멘인들이 마약을 즐겨 범죄를 증가 한다는 루머도 이번 심사에서 481명을 검사한 결과 단 4명만이 양성반응이 나왔으며 이들은 모두 불인정자로 포함되었다. 결론적으로 현재 유포되어 혐오를 조장하는 정보들은 거짓이거나 과장되어 있다.

4 대중단 이주·인권협의회 심포지움 “종교인의 관점으로 보는 난민”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 해야 하는 것은 '난민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 난민에 대한 공포의 상징조작 결과로 나타나는 '난민에 대한 물리적 폭력 사태'이다. 중앙대 오창은 교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극도의 공황상태를 경험하거나, 불가항력적 위기 상태에 빠지게 되면 상징적 제물을 만들어 현재의 고통에 대해 보상하려 한다'고 말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과, 조선인에 의한 중국인 학살사건인 만보산 사건이다.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은 1923년 9월1일 일본 대지진이 엄청난 인명 피해를 내자, 정신적 공황에 빠진 일본인들은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해 일본에 체류중인 조선인들을 학살한 일이다. 만보산 사건은 1931년 7월2일 중국 길림성의 만보산 지역에서 조선인과 중국인의 분규가 있었는데 당시 <조선일보>가 이를 과장해 속보로 보도하면서 조선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학살했던 일이다.

두 사건 모두 당시의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적, 인적 재앙에 의해 발생한 정신적 공황상태를 당시 소수자였던 조선인이나 중국인에게 전가하며 보상받으려 발생한 사건들이다. 현재의 난민문제와 비교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난민에 대한 혐오의 정서가 나타내는 폭력성을 바라보면 과도한 해석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 제주에서 일어난 여성실종사건과 같이 아무 인과관계 없는 사건들이 덧붙여져 난민공포가 더욱 심화된 사건만 봐도 난민에 대한 혐오의 정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이런 공포가 계속해서 심화된다면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견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무분별한 혐오의 정서가 퍼질 때 중요한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 대표는 정부 정책에서의 '자신감'이 중요하다 강조한다. '정부가 두려워 해서 안되며, 사람들에게 '이게 옳은 일이고, 위험한 일이 아니다'고 자신감있게 말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정부의 두려움은 거짓정보에 의한 난민 공포에 확신을 주기 때문이다.

아직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적은 한국은 중동 및 아프리카의 전쟁이 종식되지 않는 한 난민문제는 앞으로 더욱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사실 난민만이 아니라 소수자, 아니 인간에 대한 혐오 자체가 현 시대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봐

난민 거부할 수 있는 교리적 근거는 없다.
그러나 함께 해야 하는 교리적 근거는 차고 넘친다.

야 한다. 때문에 이 시대의 가장 약자인 난민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하루 속히 해소시키지 못한다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든지 또 다른 소수자를 혐오의 희생양으로 삼게 될 것이다.

4. 난민과 함께해야할 교리적 근거는 차고 넘친다.

앞서 이야기한 긴급 시국회의 당시, 어느 선진께서는 우리의 좋은 법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 정부 수립에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쪽으로 제안 했지만 주산 송도성 총무부장은 엄격한 태도로 잘라 말했다. "우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으로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대의를 가지고 있는 원불교뿐만 아니라 현 시대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혐오' 일수도 있다. 특히 원불교100주년기념대회 서울선언문에서 '상생 평화 하나의 세계'를 위해 헌신을 선언한 우리는, 현재 인종, 종교, 국적의 혐오와 벽을 치는 소아적인 이기 행위에 갇혀 버린 국수주의 민족주의에 대해 세계가 한울안 한형제 한일터임을 확인하고 실천해 가는 세계주의(일원주의)의 진정한 시험대에 서있다.

우리는 이 시대 최대의 과제인 혐오에 맞서고 난민 동포들의 자력 되찾아 주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전재동포 원호회' 어깨띠를 메고 '우리는 동포를 살리기 위하여 거리로 간다'는 현수막을 걸고 거리로 나서야 할지 모른다.

누군가 원불교에게 왜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가 묻는다면 '난민 동포를 거부할 교리적 근거는 눈을 씻고 찾을 수 없으나 난민동포를 맞이하여 그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교리적 근거는 차고 넘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난민에 대한 개신교의 디아코니아적 책임

-제주 예멘난민사태를 중심으로

홍주민(한국디아코니아)

I. 들어가면서

나는 난민과 관련하여 비전문가이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난민주제로 서있다. 원래 연초에 계획한 연중 계획에는 없던 일이다. 지난 반 년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지구의 반대편 예멘이란 나라는 우리에게 전혀 생경한 나라였다. 하지만 올 한해 이 나라의 존재는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 100년간 지구상 이처럼 지옥같은 상황은 없었다고 유엔은 공포할 정도로 위기속의 나라가 예멘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난민으로 신청하기 위해 5백 여명이 우리에게로 온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리고 지금 한국에 온 예멘인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앞으로 되어 질 상황에 대한 전망은 무엇일까? 특히 한국의 개신교는 어떻게 대응해왔고 앞으로 어떠한 전망을 할 수 있는가? 세계는 난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이 글은 이러한 물음에 대해 정리하면서 한국 개신교의 난민에 대한 디아코니아적인 책임에 대해 비판적 성찰을 하고자한다.

II. 난민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개인적 소회

개인적으로, 난민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 한국전쟁이후 나의 부친은 지방의 피난민 수용소에 급식소와 교육의 장으로서의 디아코니아 교회를 세워 평생 목회를 하시다 하늘나라에 가셨다. 어린 시절 나에게 있어 교회는 가난한 이들의 공동체였으며 나의 친구들 역시 수용소 아이들이라 낙인찍힌 아이들과 고아원 아이들이었다. 전쟁의 상흔은 처참한 가난과 실업 그리고 혈액의 이별속에 살아가는 아픈 이들로 남겨졌다. 다른 나라로부터 보내온 구호물자는 어린 시절 쉽게 접할 수 있었고 길게 이어진 난민 가옥에 구호물자를 전해주는 것은 교회의 일상이었다. 전쟁은 모

4 대중단 이주인권협의회 심포지움 “종교인의 관점으로 보는 난민”

든 것을 제로점으로 만들어 사람들을 영도의 세상으로 내몰아 갔다. 내 기억속에 난민은 그렇게 투영되어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까운 과거에 난민은 우리 자신이었다는 사실이다.

독일에서 십년간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애환을 경험한 적이 있다. 모든 것이 생경한 이국땅에서 버터내는 일은 언어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경제적인 문제 등 수 많은 문제가 중첩된 고난의 행군이였다. 특히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이 아닌 내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체류 내내 노동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여러 우여곡절을 경험한 바 있다. 가는 날부터 오는 날까지 이주노동의 세월이였다. 잊혀지지 않는 사건중 하나는, 기거할 방을 얻는 문제부터였다. 이방인으로서 부딪히는 문제는 당연히 피부색이였다. 방을 선듯 나서서 내주는 사람이 없어 곡예를 하듯 방을 얻었지만, 나올 때 보증금 문제로 집주인과의 마찰로 반년을 법정에서 서기도 했다. 얼마 안되는 보증금이었지만 안준다는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독일 친구의 형 변호사의 도움으로 1년간 법정투쟁을 통해 ‘독일국민의 이름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이방인에게 옆에서 동반해주는 것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낀 사건이였다.

또 하나의 비참은 체류연장의 문제였다. 가난한 유학생의 통장을 매 해 검증을 받으면서 계좌의 가난을 의심받아 석 달이 찍힌 체류허가를 받았을 때의 비애감은 존재에 대한 상실로 이어지는 경험 이였다. 국적국이 아닌 곳에서의 체류허가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어서 그것에 대한 부정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경험한 것이다. 언어적 장애로 장애인 취급을 받았을 때의 기분도 기억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하여튼 이주해서 살아가는 이주민의 삶은 하나부터 열까지 만만한 것이 없었다. 마치 갓난아이가 웅알이를 하고 배를 뒤집고 일어서고 걸음마를 하는 지난한 과정이 이국땅에서의 삶이라는 사실을 짧은 날 먼 이국땅에서 체득한 바 있다.

이주생활의 아픔과 공부한 내용이 그런지라 한국에 온 후 5년여를 이주민센터 관련 일을 했다. 특히 이주민에 관계된 민관 협력기관에서 일을 했는데, 그 이유는 독일 디아코니아(개신교 사회실천 기관) 현장이 민관협력에 의한 기관이었기에 한국의 민관협력 현실을 알아보고자 하는 이유였다. 하지만 당시 반(半)공무원 신분이었던 내게 난민과 미등록이주노동자는 손길과 눈길을 줄 수 없는 금단의 영역이였다. 오로지 합법적으로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과 이주여성들의 권익에 관여할 수 있었다.

민관협력 이주민센터의 생활을 접고 자유한 상황에서 올해 초여름 내게 닥친 난민의 문제는 내 중심을 바꾸어 놓았다. 2018년 4월 30일 제주에 상륙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들을 출도제한(섬 밖으로 못나가게 함)과 6월 1일부터는 아예 예멘인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 금지 조처는 나에게 의문을 가져오게 하였다. 들려오는 소식이 심상치 않았다.

그러다 우연히 접하게 된 프랑스 기자가 만든 다큐멘터리 50분 용 예멘 관련 영상물, 그것은 독일 TV에 방영된 것인데, 예멘 내전에 대한 구체적이고 생생한 영상을 담고 있었다. 나라 전체가 정지 되어 아비규환의 하루하루를 보내는 예멘 상황은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였다. 그 후 나는 예멘에 빠져들었다.

III. 난민디아코니아 직접행동

날짜도 기억난다. 6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하루 한 끼로 연명한다는 예멘친구들을 위해 '한 끼에 5천원, 1천 끼' 모금운동, '난민 디아코니아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난민디아코니아 직접행동이 시작된 것이다. 단 옛새 만에 모금액을 달성하고 제주행 비행기를 탔다. 제주에 가서 직접 맛닥뜨린 현실은 처절했다. 정부도 지자체도 손을 놓은 상태에서 전쟁의 사선을 넘어온 예멘 친구들의 안타까운 현실들이 널려 있었다. 예멘친구들이 가장 많이 기거한다는 곳으로 가서 하룻밤을 지내며 밤늦도록 대화를 했다.

독일 TV를 통해 예멘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았지만, 친구들의 헤진 옷과 부상당한 상처와 자국 그리고 회색으로 변색된 깡마른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세월호 세대같은 연령의 친구들이 무국적자로 이역만리 떨어진 이곳까지 온 사연을 들으며 눈물도 났다. 이제 돈도 떨어져 거리에서 노숙해야할 상황이란 말에 다시 '누울 자리' 모금을 전개하여 옛새 만에 이층침대 20개를 모금하여 다시 제주에 갔다. 그 후 세 번 더 갔으니 총 다섯 번의 제주행 비행기를 지난 반년동안 탄 셈이다. 이러한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힘닿는 곳 노력도 했지만 그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특히 가짜뉴스의 정도는 도를 넘어 폭력적으로 비화되기도 하였다. 세 번째 방문 시 포럼에 참여를 했다. 포럼이 진행되는 내내 반대자들의 소요는 가관이었다. 마친 후 여성들이 대부분인 반대자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폭력도 불사하려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다. 또한 청와대에 난민반대 청원이 삽시간에 70여만이 낸 것은 이 문제가 단순히 국민들의 개인적인 동기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였다.

결국은 에스더 기도운동이라는 수구 개신교인들의 댓글부대의 조직적 개입이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증명되었지만, 당시 절박한 상황에 일탈한 개신교의 모습은 큰 아픔으로 각인되었다. 하여 내국인들에 대한 인식개선 작업이 절실하다는 생각에 포럼과 방송 토론 그리고 신문기고, 알자지라

4 대중단 이주·인권협의회 심포지움 “종교인의 관점으로 보는 난민”

방송과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진실을 알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기류를 인식해서일까. 정부는 10월 17일 난민심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실망스러웠다. 난민인정을 한명도 안한 것이다. 그 후 긴박하게 돌아가는 예멘 친구들의 거취와 결정에 부응하여 10월 31일 오산에 디아코니아 센터를 열고 6명의 첫 예멘인들이 보금자리에 안착하였다.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난민 거부감은 어디서 기인할 것일까. 혹자는 우리 민족의 유전자안에 타자에 대한 깊은 거부감 인자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일까? 독일은 자신들의 게르만 우월주의, 아리안주의를 강조하다가 역사적 참사를 경험한 이후, 타자에 대한 환대교육 집중하여 오늘 날 난민 최대 환대국이 되었다. 유전자 운운하면서 인종차별의 정서를 은연중에 주사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일이다. 이는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IV. 거짓뉴스와 거짓 신학은 동전의 양면

가짜뉴스, 거짓 뉴스의 이면에는 가짜신학, 거짓 신학, 사이비 신학이 있다. 이번 난민 혐오, 난민 마녀사냥의 공로에는 일탈한 개신교의 약진이 돋보인다. 거의 한국교회를 노획하다시피 선전을 했다. 가을에 개최된 한국 개신교 교단의 총회에서 난민문제는 구체적으로 거론된 바 없다. 성명서의 한 줄로 나타낸 교단이 있을 정도이다.

난민은 이제껏 한국사회의 금기어였다. 교회마저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이번 예멘사태는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거짓정보 뉴스에 힘입어 난민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혐오로 일관하였다. 마르틴 루터가 500여년 전 기술한 <교회의 바벨론 포로>를 통해 당시의 교회의 상태를 비판한 것이 단지 옛날이야기가 아니라 21세기의 백주에 한국에서 벌어진 것이다.

여기에는 에스더 기도운동이 주도적이었는데, 필자는 물음을 제기해 본다. 에스더 기도운동이라는 특정한 단체만의 문제인가? 성소수자, 동성애에 이은 난민, 무슬림, 이슬람에 대한 무차별 혐오와 배제, 그 뒤에는 수구정치 세력과 수구개신교의 암묵적인 동거가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된다. 이 특정한 단체만이 연루된 것이 아니라 개신교 우월주의에 빠진 상당수의 개신교인들이 암묵적으로 이러한 배제와 혐의에 동의한 것이라 생각된다. 마치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이 지난 날 이 땅에서 진행된 것이리라.

난민에 대한 개신교의 디아코니아적 책임 -제주 예멘난민사태를 중심으로

한국개신교는 지난 130년간 근본주의 신학에 포로가 되어 비정상적인 유사 개신교의 행태에 익숙해져있다. 이번 제주 예멘 난민사태가 전개되면서 초반부터 개신교 교회는 다른 어떠한 종교보다 극단적인 혐오와 무관심 정서를 유지하였다. 그 이면에는 신학이 있었다. 약자를 사랑하고 연대하는 신학이 아니라 배제하고 혐오하는 신학이 저변에 강하게 흐르고 있음을 쉽게 감지할 수 있었다.

필자는 초기에 제주 첫 방문 시 제주 교회지도자분들께 한 교회나 여러 교회 시찰단위에서 예멘 친구들을 돌보는 것을 제안하였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풀어야 하는 원칙으로 제주 도지사를 만나 면담하기도 했다. 개인인 그는 반대편을 인식하여 시민들이 앞장서면 돕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임시주거공간을 마련하여 난민심사 진행과정에 시행착오를 마련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필자는 세계의 곤경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한국사회에 물음을 제기한다. 소위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다. 4년 전, 세월호 참사를 생각하면, 아직도 그 골든타임에 대응하지 못한 우리의 안타까움이 밀려온다. 골든타임은 때가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V. 예멘 현재 상황

예멘 상황을 적시하면 어린 아이도 공감한다. 예멘은 내전이 격화된 2015년 이래 5만-6만 사망하고 200만 명 정도가 삶의 터전 잃고 19만 여명이 나라밖으로 몸을 피했다. 2천 9백만 인구 중 4분의 3인 2천 2백만여 명이 외부의 식량지원에 의존하여 살아간다. 그 중, 800만 명이 아사위기에 처해 있고 콜레라로 100만 감염이 되어있는, 현재 예멘 상황은 유엔의 발표대로 지난 100년 이래 지구상의 최악의 인도주의적 참사지역이다.

예멘은 왜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일까? 평화스러웠던 나라가 한순간에 나라가 정지된 이면에는 아주 복잡한 인과관계가 있다. 예멘은 왕정을 뒤엎고 공화정을 1962년에 수립한 나라이다. 하지만 공화파와 왕당파가 대립하게 되었고, 공화파는 이집트가, 왕당파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을 하여 내전으로 비화되고, 70년 정전협정을 체결 할 때까지 수십 만 명의 사상자가 나온다. 1939년부터 영국 식민지였던 남예멘이 1967년 독립하자 남북예멘 사이에 국경분쟁이 생겨 1979년 무력충돌로 이어진다. 노선 갈등과 내전으로 불이 붙은 결과, 수천 명이 부상당하거나 숨진다.

1990년 5월,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룬 예멘, 하지만 다시금 내전이 일어나 남예멘이 1994년 5월 분리독립 선언을 한다. 그리곤 북예멘은 군사력으로 제압하고 남예멘은 대항한다. 설상가상으로 2004년부터는 북예멘에서 이슬람 시아파 반군과 정부군 사이의 내전이 발발한다. 2011년 아랍의 봄 사태는 북부 시아파,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 남부 분리주의 세력, 동부 남부 이슬람 무장세력

4 대중단 이주·인권협의회 심포지움 “종교인의 관점으로 보는 난민”

이 개별적으로 정부와 대결한다. 네 개의 전선이 형성된 셈이다. 34년 장기집권하던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은 2012년 결국 물러난다.

하지만 시아파 후티 반군은 2015년 1월 대통령궁을 점거한 이후, 사우디가 주도하는 수니파연합군이 개입한다. 이란은 반군쪽에, 사우디는 미국과 영국의 지원아래 무기와 장비를 제공받는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무기를 공급하였다. 11월 7일, 사우디가 주도하는 연합군은 남서부 호데이다 항구를 봉쇄하려고 100회 이상의 공습을 퍼부었다. 식량과 의약품 그리고 연료의 80%를 민간인에게 전달되는 통로인 호데이다를 집중공략하는 사우디의 작전으로 예멘은 더욱 지옥으로 변하고 있다.

여기서 앞으로 난민의 행렬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날 것이란 예측을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란에 대한 미국의 압박으로 이란마저 내란이나 미국과의 전쟁이 시작된다면 견잡을 수 없는 난민의 행렬은 증폭될 것이란 전망을 한다. 이러한 21세기의 난민러시에 독일은 그 한가운데에서 난민을 수용한 나라로 소개된다.

VI. 독일의 난민 수용

2015년 독일은 90만 여명의 난민을 수용했다. 필자는 그 해 여름 독일 중부 도시 하이델베르크 난민보호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다. 엄청난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침착함과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2016년 68만 명을 수용하고 26만 명을 인정하고, 2017년 60만 명을 수용해 현재 140만의 난민이 독일에 거주하고 있다. 독일은 가히 난민 수용의 모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세계 6천 5백 만명의 난민이 현존하는 지금, 난민의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독일 개신교의 사회 실천기구인 디아코니아의 역할이 주목된다.

독일의 난민수용을 맡고 있는 디아코니아는 170여년의 역사를 지닌 사회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곳이다. 바이마르공화국 이래로 민관협력의 전통이 지속된 독일 사회국가는 디아코니아가 단연 선두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디아코니아는 전국에 3만 1천개의 기관이 있고 45만여 명의 실무자와 70만 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하지만 국내문제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곤경의 문제에도 깊이 있게 관여하여 이번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난민사태도 디아코니아가 선도적으로 직접적인 행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시민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의 뒤엔 국가의 보충적 도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연방이나 주가 난민의 문제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제주예멘 사태과

난민에 대한 개신교의 디아코니아적 책임 -제주 예멘난민사태를 중심으로

정에서 필자는 안타깝게도 한국 정부나 지자체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엣그제 11월 9일, 바이마르공화국 100주년 기념 의회연설에서 독일 대통령 슈타인마이어는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열변을 토했다: 축포속에 시작한 공화국이 히틀러의 광기로 무너진 것을 기억해야 한다. 히틀러가 성소수자, 장애인, 유대인, 이주민, 난민 학살로 몰고 간 지난날 역사, 공화국 설립 축하 세레모니 이후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식어가면서 한순간에 가축을 실어 나르는 차에 유대인과 약자들을 가스실로 보내는 광기로 이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한순간이다.

우리의 시계는 어디쯤 있는가...촛불혁명의 축포가 얼마 되지 않아 반동세력과 기득권 세력의 탐욕이 가관이다. 성소수자, 난민신청자,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를 마녀사냥 하듯, 몰고 가는 광기가 보이지 않는가. 이번 제주에 온 예멘 난민들에 대한 혐오와 배제가 이를 방증한다.

VII. 나가면서: 난민에 대한 개신교의 디아코니아적 책임

현재 한국은 이방인들에 대한 환대가 세계적으로 극히 소극적인 수준의 나라이다. 2017년 한국 인구대비 난민수용률 세계 139위이며, 2017년 난민인정률 1.51%(전세계 24.1%, 유럽연합 33%, 미국 40%)가 이를 방증한다. 박해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는 내란도 난민인정으로 유엔에서는 정하였지만 우리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전쟁으로 생긴 참상에 국제사회가 맺은 1951년의 유엔 난민 협약에 한국은 1992년에 가입하고 2013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번 제주예멘사태로 비추어 볼 때, 한국은 난민들을 환대하는 나라가 아니라 거부하는 나라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인도적 체류허가라는 체류허가도 여러 제약을 담은 허가이기에 비인도적인 견디어 내는 삶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시 말해, 유엔 협약에 가입만 했고 난민법만 만들어 놓은 것이지 난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한국사회가 국제사회의 평화기여에 대한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다섯명의 국회의원들이 난민법 개악에 나서는 일은 너무도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을 말해준다.

교회는 어떠한가? 난민반대집회에 동원된 개신교의 물결이 세계의 조소를 자아낸다.더 이상 부끄러운 행렬은 멈추어야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약자를 섬기는 디아코노스로 오셨다. 제자들이

4 대중단 이주·인권협의회 심포지움 “종교인의 관점으로 보는 난민”

상정한 큰 자나 군림하고 지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시중드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몸으로 본을 보여주셨다.

성장과 번영의 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약한 이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 그리고 사랑의 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신앙하는 그리스도는 디아코노스. 시중드는 이다.(누가22.27) 성조기나 이스라엘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 난민으로 와서 난민과 함께 하신 고난의 십자가를 들어야 한다.

이러한 디아코노스 주님을 따르는 제자됨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5만 5천개의 교회가 전국에 포진되어있다. 지역에서 난민, 인도적 체류자, 난민소송중인 나그네에 대한 신학적 실천, 신앙적 실천, 성서적 실천으로 다가가야 한다. 난민은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무조건 께안을 대상이다.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비유에서 예수는 명토박는다: 너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따듯하게 영접하였다. 너는 천국에 이르리라. 너는 내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 나를 받아주질 않았다. 너는 지옥 영영 형벌에 처해지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 영웅적 행동을 하라는 요구가 없다. 단지 이 땅의 약자들, 특히 난민처지가 되어 이 땅에 온 나그네에게 손을 건네고 동반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지금 난민처지로 배회하는 이들이 난민인정 받은 이들 8백 여명과 인도적 체류자인 1천 9백 여명 그리고 여기에서 제외된 난민소송 단계에 있는 3만 여명의 견디어 내는 이들이 이 땅에 있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비존재자들이다. 어찌면 유령과 같은 존재로 ‘버티내는’ 이들이다.

필자는 난민수용국가 중 대표적인 독일이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이유를 알고 있다. 특히 개신교의 디아코니아와 가톨릭의 카리타스가 적극적으로 나그네 된 난민들을 구체적으로 돌보고 있는데, 그들을 움직이는 동기는 전술한 바처럼, 약자로 오는 그리스도, 다시 말해, 난민신분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따듯하게 맞이하는 신앙행위이기 때문이다. 마르틴 루터는 1523년 라이스니히 공동함 규정의 서문에 마태복음 25장의 최후심판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인용하며 명토박는다: 지금 곤경에 빠진 이를 섬기는 것보다 더 큰 예배는 없다.

신앙과 사랑은 별개가 아니다. 사랑실천은 신앙행위에 속한다. 한국의 개신교가 이 땅의 가장 약자인 난민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야 할 이유는 알량한 자선이나 시혜가 아니다. 난민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따듯하게 맞이하는 것, 그것은 구원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어둠을 타하기 보다는 촛불을 하나 켜는 게 낫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혜찬스님

석가모니 부처님 재세시(在世時) 카필라와 이웃나라 콜리 사이에는 로히니강이 흐르고 있었다. 콜리와 카필라는 예전부터 국교가 매우 두터운 사이였으나 어느 해 여름 가뭄이 몹시 들어 로히니 강물은 바닥이 나고 강변에 있는 저수지 물도 얼마 남지 않았다.

카필라와 콜리 사람들은 저수지 양쪽에서 서로 물을 끌어들이려다가 큰 싸움이 벌어졌다. 양편이 다들 지나치게 흥분한 나머지 살기가 등등하여 서로 맞붙어 싸우려고 했다. 이 말을 전 해 들은 부처님은 급히 로히니강으로 나가셨다.

부처님을 보자 그들은 들었던 연장을 놓으며 합장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여러분들은 물과 사람. 이 둘 중에 어느 편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양편의 사람들이 부처님께 답했다

"물론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불교는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소중하다는 불살생의 부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한다.

로히니강의 이야기는 불교는 이 세상의 어떠한 이해관계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우선임 강조하는 하나의 사건이다.

난민문제에 대한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난민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분들이 많다. 그 분들은 난민들 때문에 '범죄가 늘어나고 사회 갈등도 커질 것이다. 우리도 살기 힘든 판에 우리의 세금으로 그들을 왜 도와야 하는가?', 우리의 일자리도 부족한데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을까 하며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다.

난민 문제는 국가와 사회, 문화와 종교 등 다양한 문제가 얽히고설킨 민감한 사안으로 어느 주장도 전적으로 틀렸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문명국가임을 자부할 때 난민을

4 대중단 이주·인권협의회 심포지움 “종교인의 관점으로 보는 난민”

잠재적 범죄인으로 보는 것은 반문명인의 편견이라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에 인색한 대표적인 국가로 손꼽힌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2년 난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뒤 1994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2만 2792명이 난민 신청을 했는데 철회 건수를 제외한 난민 인정은 672명(3.0%), 인도적 체류허가는 1156명(5.1%)뿐이었다 한다.

반면 대표적 난민수용국인 독일은 2017년 60만 3428명에 대한 1차 난민 심사에서만 12만 3909명(20.5%)을 난민으로 인정 했다. “한겨레신문 2018-10-18”

2018년 10월 30일 난민 인권 센터는 “난민을 환영 한다”는 제하(題下)의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모두 다르다. 피부색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 다름은 그 자체로 존중 받아야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은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 모든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존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며 난민과 함께 살 것을 천명 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바라문이며 누가 천한자인가? 천민 계급을 타고 났더라도 그 행실이 올바르고 진리를 구하는 자와 바라문으로 태어났어도 계율을 지키지 않고 쾌락에 탐닉하는 자, 누가 천한 자이며 누가 귀한자인가? 귀천은 출생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그 사람의 행동에 의해 귀천이 정해진다”. 라는 말씀으로 삶과 행동에서의 귀천을 이야기 하셨다.

불교는 연기법으로 세상을 인식 한다. 인드라마 같이 씨줄과 날줄이 얽혀 있는 중중무진(重重無盡)의 세계관으로 볼 때 세상의, 아니 우주의 모든 존재는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 성장하며 그 상호작용은 모든 존재가 서로 상호 작용하는 관계임을 확인케 한다.

이 상호작용은 나와 남이 아니라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동체대비 사상으로 확장되고 대비구세(求世大悲)의 활동으로 귀결 된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는 “중생이 아픈 연고로 보살이 아프다. 보살의 병은 중생의 아픔으로 일어난 것이니 중생의 병이 나오면 보살의 병도 낫는다”.고 하였다. 이는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아픔이 세상의 아픔이 되며 중생의 행복은 나의 행복이고 나의 행복은 세상의 행복이 됨을 밝히는 것이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세계일화(世界一花)는 “홀로 핀 꽃이 아니라, 함께 핀 세계는 한송이 꽃과도 같음”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어떤 꽃이든 씨를 맺고 꽃씨를 퍼트리려면 벌과 나비등 매개자가 있어야 한다. 그런 매개자가 없으면 꽃이 피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난민의 문제는 세계일화라는 위

“어둠을 타하기 보다는 촛불을 하나 켜는 게 낫다”

대한 꽃을 피우고 극락정토(極樂淨土)라는 이상향의 세계건설을 위해 우리에게 매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중의 한 방식이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수덕사의 만공선사는 세계일화라는 법문을 통해 “너와 내가 둘이 아니요, 이 나라 저 나라가 둘이 아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한 송이 꽃이다…….지렁이 한 마리도 부처로 보고…….부처로 보아야 이 세상 모두가 편안할 것이다”.라고 말씀 하셨다.

‘현대 인도불교의 중흥자이자 인도 불가촉민 해방의 대부’라 불리는 암베드카르(Dr.Ambedkar.1891-1956)는 불교의 뛰어난 교리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의 실천 행동을 강조했다.

동체대비(同體大悲), 구세대비(求世大悲)의 부처님 사상, 자비실천으로 난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 모든 생물(자연/생명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 모두)을 사랑하는 마음의 자무량심(慈無量心)과 모든 살아 있는것에 대한 고통을 없애주려는 마음, 중생을 지극히 연민하여 고통을 들어주려는 동체대비의 비무량심(悲無量心)과 나와 다른 이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는 희무량심(喜無量心)과 모든 생명에 대해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하는 사무량심(捨無量心)의 자,비,희,사,사무량심(四無量心)의 부처님의 마음으로 우리 불자들도 난민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사람입니다.

아미아타 핀다

안녕하세요. 저는 난민지위를 얻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1990년 본국에서의 여성할례를 피해 시에라리온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1년을 지냈지만 내전이 터져 기니로 다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기니에서 4년을 지내고 또 다른 국가위기가 생겨 가나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에 있는 난민캠프에서 17년을 살았고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정부가 한 부모 가정을 돕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라이베리아는 비자면제 대상국이었고 저와 제 딸의 더 나은 미래와 보호를 위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3월 7일 한국에 왔고 저는 1990년부터 본국을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난민불인정처분취소소송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패소하였습니다. 제 딸의 경우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 되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다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제 딸의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 딸이 라이베리아가 아닌 가나에서 태어났고 그녀가 라이베리아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녀의 목숨이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목표대상이라면 저는 여전히 목표대상이 됩니다. 제가 도망을 친 라이베리아 최북단에 있는 로파(Lofa) 자치주에서는 로파사람이라면 남성과 여성 모두 할례를 거쳐야 합니다. 할례를 피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 딸은 할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정부가 여성과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잘 돌봐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한국에 오게 되면 유엔난민기구를 만나 더 나은 삶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이미 가나에서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치열하게 싸워왔고 한국에 오면 다른 한국인 처럼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입국하자마자 시작부터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고 지금도 변함없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4 대중단 이주·인권협의회 심포지움 “종교인의 관점으로 보는 난민”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점은 일자리와 차별입니다. 많은 차별을 겪어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난민신청을 하고 신분증을 얻고 그로부터 6개월 동안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부양해야 할 딸이 있고 집세도 내야했습니다. 결국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으로 일을 한 곳은 섬유제조공장이었습니다. 섬유가 기계에서 나오면 마지막 부분을 가위로 잘라내는 작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섬유에서 전기 충격이 느껴졌고 가위를 댈 수 없어 공장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가 잘못된다면 혼자 남게 될 딸이 떠올랐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장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폭언이었습니다.

다음에는 헌 옷을 분리하는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 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언니들과 할머니들이 더러운 원숭이와 일할 수 없다고 사장에게 저를 자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날 언니들과 할머니들은 흑인과 일하고 싶지 않다고 장갑을 내려놓고 일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장은 제가 일할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만 10명이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며, 1명 때문에 10명을 잃고 싶지 않다면서 이틀 치의 급여를 주고 저를 보냈습니다.

김치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점심 때 밥과 오이만 줬습니다. 하지만 일이 필요했고 정말 원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일이 끝났는데 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공장은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깊숙한 곳에 있었고 같이 일하는 동료A가 차로 데려다 준다고 했습니다. 동료B도 함께 타기로 했는데 동료B는 제가 같이 차를 탄다는 얘기를 듣자, 제가 한국어를 이해 못하는 줄 알고 제 앞에서 아프리카 사람은 더럽다는 말을 했습니다. 동료A의 설득으로 결국 함께 차를 타고 나왔지만 차 안에서도 동료B는 계속 저에 대한 욕을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겨우 지난 9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딸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법원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옆에 언니가 앉아있었는데 저희를 위 아래로 내려다보더니 냄새가 난다는 듯이 코를 만지며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앉아 계속 쳐다봤습니다. 제 딸 또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차별을 겪어왔습니다. 몇 주 전 저는 제 딸과 언쟁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제가 학교에서 매일 친구들로부터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들이 저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집에 오면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요.”

저는 그녀가 친구들 사이에서 여전히 어려움들을 마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기분 나쁠 필요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녀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며 그녀가 창조된 그 모습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친구들이든 그 누가 그녀에게 뭐라고 말하든 잊으라고 했습니다. 물론 아프지요.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제 둘째 아들의 유치원 선생님은 아프리카 출신 아이들은 냄새가 너무 나서 아프리카 출신 아이들과 한국 출신 아이들이 함께 놀거나 지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나빴습니다.

동두천에서 사는 아프리카 출신 난민이 많습니다. 제가 동두천난민공동체를 조직해야겠다는 생각은 가나 난민캠프에서의 제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난민캠프에 있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원했습니다. 난민캠프에서 우리는 평화적인 집회를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 정부가 저희에게 공평한 대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정부는 저희에게 5만원(50달러)을 주고 본국으로 송환하려 했습니다. 어떻게 그곳에서 20-30년을 산 사람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을 본국으로 송환하겠다는 건가요? 그런데 정부는 그들에게 5만원을 주고 본국으로 송환시키려 했습니다. 집을 떠난 지 30년입니다. 어떻게 시작할 지도 모릅니다. 30년을 보낸 사람을 5만원만 주고 보내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난민여성은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가나 정부가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우리의 외침이 국제사회에 들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난민캠프에서 겪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한국에서의 상황을 돌아봤을 때, 한국 정부는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들이 병원에서의 의료혜택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권리는 가질 수 있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난민공동체를 조직한 이유입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목소리를 갖고있는 사람들을 찾고 모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우리의 목소리를 알리고자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지역사회는 국제사회도 포함합니다. 제 목표는 오직 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까지 저희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세상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 합니다. “당신은 한국에 사니 당신의 아이들은 인정받겠군요.” 저는 “아니요.” 라고 답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정부는 아이들에게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비를 내리지 않는 건가요? 아마도 우리 부모 때문이겠지요. 만약 그들이 아이들에게 권리를 주면 부모들도 혜택을 얻게 될 테니까요. 그들은 저희를 거부하고 더 엄격하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공동체로서 그리고 한 몸으로

4 대중단 이주·인권협의회 심포지움 “종교인의 관점으로 보는 난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입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우리 안에는 모두 같은 피를 갖고 있습니다. 백이 또는 흑인이 다치면 빨간 피가 나옵니다. 검정 피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포용할 줄 아는 것을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불교이든 기독교이든 당신의 나라에 와서 지내는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차별을 멈추시다. 사람들과 아이들은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서로를 포용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fugee statement]

We are all human.

Amiatta Finda

Good afternoon, everyone. I came to Korea to get refugee status. In 1990 I had to escape to Sierra Leone from the female circumcision in my country, Liberia. I stayed there for 1 year but a civil war broke out in Sierra Leone and I had to run away to Guinea again. I stayed in Guinea for 4 years. But then a national crisis occurred in Guinea and I had to move to Ghana. I stayed at refugee camp in Ghana for 17 years and I gave birth of my daughter. At the camp I heard that South Korean government supports single-parent family. Liberia was a visa-free country for South Korea so for the better life and protection for me and my daughter I started to save money to come to Korea. Finally I came to Korea in March 7, 2012 and since 1990 I could not go back to my country.

Regarding my refugee status, I lost my case at the Supreme court. In my daughter's case, the Supreme Court has sent back her case to the High court for a review so she had an interview again with the immigration. However the immigration denied her refugee status. The reason was because she was not born in Liberia but in Ghana, there is no way her life will be in danger if she goes back to Liberia. But it is not like that. If I am the target I am still the target. In Lofa county where is located at the northernmost in Liberia and where I ran away from, every child whether male or female has to do the circumcision. The only way to avoid the circumcision is just to escape from it. However the immigration did not accept my daughter because she is not a target for it.

At first I had expected that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accept women and

4 대중단 이주·인권협의회 심포지움 “종교인의 관점으로 보는 난민”

children and take good care of them. If I come to Korea, I planned to meet UNHCR and wanted to have a better life. But I was so disappointed to Korea. I had already struggled a lot in Ghana and I thought if I come to Korea, I could live like other Koreans. However I had to struggle from the beginning as soon as I entered in Korea and I have been struggling until now.

The hardest issues are job and discrimination. I have experienced so many discrimination. After applying for refugee status and having an ID in Korea, refugee applicants are not allowed to work for 6 months from the date of issue. However I have a daughter to support and I had to pay for my house rent. After all I had to work talking a risk of losing my ID. The first company I worked was a textile company. My work was cutting a cloth that comes out from the machine, using scissors. But I felt an electronic shock from the cloth and I could not put the scissors on the cloth so I had to report to Gongjangjang(manager). I could not avoid reporting it to the manager. I thought of my daughter who will be left alone, If something wrong happens to me. However the manager lashed out at me with the words that I cannot understand.

After that, I worked in a company dealing with used clothes. I really worked hard on the first day. But on the following day all Unni(older sister) and Halmuni(grandmother) complained the boss that he has to fire me since they cannot work with the dirty monkey. On that day they put their gloves down and just stood up not working. At last the boss told me that he knows I am ready to work but 10 people are not working and he does not want to lose 10 people because of 1 person. Then he gave me my 2days salary and sent me home.

I have worked in a company making Gimchi. At the company during lunch break, they only gave me rice and cucumber. However I really needed a job and did not talk about it. One day it was raining so hard and the factory was located where there is no public transportation. My coworker ‘A’ said I can come with his car. Another coworker ‘B’ was supposed to take his car as well. but then once ‘B’ heard that I will take the car together, ‘B’ told ‘A’ that African people

are dirty. Maybe 'B' thought I can not understand Korean at all. I thought that I cannot worker with a person who thinks about me in that way. It just happened last September this year.

One day, I was on the way to the court by subway with my daughter. There was Unni who was sitting beside us. She looked at us up and down, touched her nose as we have a bad smell then she moved to other sit and kept on staring at us. Even my daughter have been experienced of discrimination from elementary up to the high school. Several weeks ago she and I tried to argue and she told me how tired I am.

“I am so tired you don't know what I am going through in the school everyday with my friends. You don't know how they treat me, but when I come home I don't want to tell you. I don't want to talk. I just keep quite.”

I know that she is still facing this kind of tense among her friends. I tried to tell her that she doesn't have to feel bad, because she is who she is the way God created her so she should accept the way she was created and just forget about what her friends or whoseever around her telling her. I know it hurts, because we are human. And the teacher of my second child at the kindergarten said African children smell too much this is the reason why they don't allow the African and korean children to play or to stay together. That is so bad.

There are many African refugees residing in Dongducheon. The idea to organize Dongducheon Refugee Community came to me with my experience in Ghana refugee camp. When I was in the refugee camp, we wanted our rights. On the refugee camp we as refugee women went for peaceful protest because the way Ghana government treated us was not fair. They said they want to repatriate us people with giving us 50,000won(50dollar). How will you repatriate a person who have lived in the country for 20-30 years and people was born in the country? but they want to repatriate them with just 50,000won. You left your home for 30 years, you don't know how to start. After spending 30 years, you want to send

4 대중단 이주·인권협의회 심포지움 “종교인의 관점으로 보는 난민”

them back home with 50,000won. We the refugee women came together to protest and le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ear our cry how we have been treated by Ghana government.

When I think back what I went through at the refugee camp and look at the situation here in Korea, Korean government doesn't want to recognize the children who are born here. Even though you don't want to accept them as a citizen, at least you can recognize them to have little privilege like hospital where they can have medical insurance and other access. This is the reason why I organized the refugee community. Let me see and put people together who have the same thinking and same voice. And we will raise our voice to the community. When I say community, it includes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My goal is not only to be in Korea but to go ov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 are a lot of things happening in Korea and the world don't know.

Some people say “You live in Korea, they recognize children.” I say “No.” They say the children born in the country must have the rights. Why the government can't have mercy on the children to have the rights. Maybe because of us the parents. If they give the children the rights, the parents get benefits. I know they don't want us to benefit. They reject us and be more strict on us. What we can do as a community as one body is not to give up. We have to pursue. After pursuing we achieve something.

We are all human. Be a black or a white, we all have the same blood inside us. When the white person or the black person get hurt, red blood will come. There is no black blood. That makes us to be one. So I think it is good we all learn to love and embrace each other. Whether you are a Buddhist or a Christian we should love and embrace people who come and stay in your country. Let us stop discrimination. These people and these children don't need to be discriminated. We just have to embrace and love each other.

Thank you.